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김기수, 이동열

대전복지효재단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김기수, 이동열

• 책임연구원

김기수 (대전복지효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이동열 (대전복지효재단 정책연구팀 위촉연구원)

• 연구지원

이춘성 (대전복지효재단 복지사업팀 팀장)

김지나 (대전복지효재단 복지사업팀 팀원)

조정하 (대전복지효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원)

대전복지효재단



## •• 차례 ••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제2절 조사개요 .....	3
1. 조사대상 .....	3
2. 조사내용 .....	4
3.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	5
<b>제2장 조사대상 시설의 특성</b> .....	7
제1절 조사대상 시설의 일반적 특성 .....	7
1. 시설 유형 .....	7
2. 시설 설립년도 .....	8
3. 시설 소재지 .....	9
4. 시설 운영주체 .....	10
5. 시설 근로형태 .....	11
6. 시설의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 .....	12
7. 시설 주말 운영 현황 .....	13
제2절 조사대상 시설의 종사자(근로자) 현황 .....	14
1.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	14
2. 종사자의 교육수준 및 전공 현황 .....	15
3. 종사자의 근무경력 .....	17
4. 종사자 근무 현황 .....	18
5. 종사자의 주된 근로시간 .....	19
6. 종사자 연차 유급휴가 일수 .....	20



제3절 이용자(생활인) 현황 .....	21
1. 이용자 성별 및 연령 .....	21
2. 이용자 장애 및 만성질환 현황 .....	23
3. 이용자 입주기간 .....	25
4. 이용자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내용 .....	26
5.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주말 시설 이용 여부 및 보호자 유무 .....	28
<b>제3장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욕구 .....</b>	<b>29</b>
제1절 대체인력 활용현황 .....	29
1. 대체인력 채용경험 .....	29
2. 대체인력 채용의 가장 큰 어려움 .....	31
3.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에게 맡긴 업무의 수준 .....	32
4.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부담을 해소한 정도 .....	33
5.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 .....	34
제2절 업무 공백 현황 .....	35
1. 2015년 업무공백 현황 .....	35
2. 2016년 업무공백 현황 .....	37
3. 업무공백 시 이용자 지원 방법 .....	39
제3절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40
1.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종사자 여부 .....	40
2. 장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 .....	41
3. 단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 .....	42
4. 단기, 장기 업무공백 중 대체인력지원이 더 필요한 영역 .....	43
5. 대체인력 활용 시 업무 대체 가능 정도 .....	44
6.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근로 시간 .....	47
7. 대체인력 파견 기간 .....	50
8.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 .....	54

제4절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인력에 대한 욕구 .....	56
1. 대체인력 선호 성별 .....	56
2. 대체인력 선호 연령대 .....	57
3. 대체인력의 경력 선호 여부 .....	58
4. 대체인력에게 맡겨질 업무의 수준 .....	59
5. 대체인력의 자질 .....	60
6. 대체인력 선호 자격 정도 .....	61
7. 대체인력 인건비 적절성 .....	62
8. 대체인력 사전교육 .....	67
<b>제4장 결론 및 제언 .....</b>	<b>69</b>
제1절 주요 결과 .....	69
1. 조사대상 시설의 특성 .....	69
2.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욕구 .....	70
제2절 제언 .....	72
○ 참고문헌 .....	75
○ 부록: 조사표 .....	77



## •• 표 차례 ••

〈 표 1-2- 1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수 .....	3
〈 표 1-2- 2 〉	종사자 기준 5인 이하 생활시설 및 종사자 수 .....	3
〈 표 1-2- 3 〉	조사 내용 .....	4
〈 표 2-1- 1 〉	시설 유형 .....	7
〈 표 2-1- 2 〉	시설 설립년도 .....	8
〈 표 2-1- 3 〉	시설 소재지 .....	9
〈 표 2-1- 4 〉	시설 운영주체 .....	10
〈 표 2-1- 5 〉	시설 근로형태 .....	11
〈 표 2-1- 6 〉	시설의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중복응답) .....	12
〈 표 2-1- 7 〉	시설의 주말 운영 여부 .....	13
〈 표 2-1- 8 〉	주말 운영 시 어려운 부분 .....	13
〈 표 2-2- 1 〉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	14
〈 표 2-2- 2 〉	종사자의 교육수준 .....	15
〈 표 2-2- 3 〉	종사자의 전공 현황 .....	16
〈 표 2-2- 4 〉	종사자의 근무경력 .....	17
〈 표 2-2- 5 〉	종사자의 근무 현황 .....	18
〈 표 2-2- 6 〉	종사자의 주된 근로 시간 .....	19
〈 표 2-2- 7 〉	종사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	20
〈 표 2-3- 1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성별 및 연령 .....	21
〈 표 2-3- 2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성별 및 연령 .....	22
〈 표 2-3- 3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장애 특성 .....	23
〈 표 2-3- 4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의 장애 및 만성질환 현황 .....	24
〈 표 2-3- 5 〉	이용자(생활인)의 입주기간 .....	25
〈 표 2-3- 6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내용 .....	26
〈 표 2-3- 7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내용 .....	27
〈 표 2-3- 8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주말 시설 이용 여부 및 보호자 유무 .....	28

< 표 3-1- 1 >	대체인력 채용경험 .....	30
< 표 3-1- 2 >	대체인력 채용의 가장 큰 어려움 .....	31
< 표 3-1- 3 >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에게 맡긴 업무의 수준 .....	32
< 표 3-1- 4 >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부담을 해소한 정도 .....	33
< 표 3-1- 5 >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	34
< 표 3-2- 1 >	2015년 업무공백 현황(평균) .....	36
< 표 3-2- 2 >	2016년 업무 공백 현황(2016년 1월~8월, 평균) .....	37
< 표 3-2- 3 >	2016년 업무공백 예상 일수(2016년 9월~12월, 평균) .....	38
< 표 3-2- 4 >	업무공백 시 이용자 지원 방법(중복응답) .....	39
< 표 3-3- 1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종사자 여부 .....	40
< 표 3-3- 2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장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필요성 .....	41
< 표 3-3- 3 >	병가, 연가, 특별휴가, 교육 등 단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필요성 .....	42
< 표 3-3- 4 >	단기, 장기 업무공백 중 대체인력지원이 더 필요한 영역 .....	43
< 표 3-3- 5 >	대체인력 활용 시 업무 대체 가능 정도 .....	44
< 표 3-3- 6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중복응답) .....	45
< 표 3-3- 7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 순위 .....	46
< 표 3-3- 8 >	근로 시간대별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 .....	47
< 표 3-3- 9 >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평균 시간대 .....	48
< 표 3-3-10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대 순위 .....	49
< 표 3-3-11 >	대체인력 파견 최소 신청 일수 적절성 여부 .....	50
< 표 3-3-12 >	대체인력 1회 신청 시 최소 시간으로 적절한 시간 단위 .....	51
< 표 3-3-13 >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예상 일수 .....	52
< 표 3-3-14 >	시설유형별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예상 일수 .....	53
< 표 3-3-15 >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중복응답) .....	54
< 표 3-3-16 >	아동복지시설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중복응답) .....	55
< 표 3-4- 1 >	대체인력 선호 성별 .....	56
< 표 3-4- 2 >	대체인력 선호 연령대 .....	57
< 표 3-4- 3 >	대체인력 경력 선호 여부 .....	58
< 표 3-4- 4 >	대체인력에게 맡겨질 업무의 수준 .....	59



< 표 3-4- 5 >	대체인력 자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위 .....	60
< 표 3-4- 6 >	대체인력 선호 자격 정도 .....	61
< 표 3-4- 7 >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	62
< 표 3-4- 8 >	대체인력 주말(휴일)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	63
< 표 3-4- 9 >	대체인력 주말(휴일) 인건비 추가 지급 시 합리적 수준 .....	64
< 표 3-4-10 >	대체인력 야간(저녁~아침)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	65
< 표 3-4-11 >	대체인력 야간(저녁~아침) 인건비 추가 지급 시 합리적 수준 .....	66
< 표 3-4-12 >	대체인력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중복응답) .....	67
< 표 3-4-13 >	대체인력의 적절한 교육 이수 시간대 .....	68

## •• 그림 차례 ••

[ 그림 2-1- 1 ]	시설 설립년도 .....	8
[ 그림 2-1- 2 ]	시설 소재지 .....	9
[ 그림 2-1- 3 ]	시설 운영주체 .....	10
[ 그림 2-1- 4 ]	시설 근로형태 .....	11
[ 그림 2-2- 1 ]	종사자의 교육수준 .....	15
[ 그림 2-2- 2 ]	종사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	20
[ 그림 2-3- 1 ]	이용자(생활인)의 입주기간 .....	25
[ 그림 2-3- 2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낮 시간 외부활동 내용 .....	26
[ 그림 2-3- 3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낮 시간 외부활동 내용 .....	27
[ 그림 2-3- 4 ]	장애인분야 이용자(생활인) 주말 시설 이용 여부 및 보호자 유무 .....	28
[ 그림 3-1- 1 ]	대체인력 채용 경험률 .....	30
[ 그림 3-1- 2 ]	대체인력 채용의 가장 큰 어려움 .....	31
[ 그림 3-1- 3 ]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에게 맡긴 업무의 수준 .....	32
[ 그림 3-1- 4 ]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부담을 해소한 정도 .....	33
[ 그림 3-1- 5 ]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	34
[ 그림 3-3- 1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종사자 비율 .....	40
[ 그림 3-3- 2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장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필요성 .....	41
[ 그림 3-3- 3 ]	병가, 연가, 특별휴가, 교육 등 단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필요성 .....	42
[ 그림 3-3- 4 ]	단기, 장기 업무공백 중 대체인력지원이 더 필요한 영역 .....	43
[ 그림 3-3- 5 ]	대체인력 활용 시 업무 대체 가능 정도 .....	44
[ 그림 3-3- 6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중복응답) .....	45
[ 그림 3-3- 7 ]	근로 시간대별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 .....	47
[ 그림 3-3- 8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대 순위 .....	49
[ 그림 3-3- 9 ]	대체인력 파견 최소 신청 일수 적절성 여부 .....	50
[ 그림 3-3-10 ]	대체인력 1회 신청 시 최소 시간으로 적절한 시간 단위 .....	51
[ 그림 3-3-11 ]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중복응답) .....	54



[ 그림 3-3-12 ]	아동복지시설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중복응답) .....	55
[ 그림 3-4- 1 ]	대체인력 선호 연령대 .....	57
[ 그림 3-4- 2 ]	대체인력 경력 선호 여부 .....	58
[ 그림 3-4- 3 ]	대체인력에게 맡겨질 업무의 수준 .....	59
[ 그림 3-4- 4 ]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	62
[ 그림 3-4- 5 ]	대체인력 주말(휴일)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	63
[ 그림 3-4- 6 ]	대체인력 주말(휴일) 인건비 추가 지급 시 합리적 수준 .....	64
[ 그림 3-4- 7 ]	대체인력 야간(저녁~아침)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	65
[ 그림 3-4- 8 ]	대체인력 야간(저녁~아침) 인건비 추가 지급 시 합리적 수준 .....	66
[ 그림 3-4- 9 ]	대체인력의 적절한 교육 이수 시간대 .....	68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병가 등 단기간 결원 시 대체인력 희망자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설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 및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안내: 권고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대체인력지원사업은 공무원의 경우 2005년도에 대체인력뱅크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불과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2013년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대전복지재단, 2014)’가 이루어졌고, 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복지효재단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655개소(2016. 6. 30. 기준)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생활시설이 259개소, 이용시설이 396개소이다. 종사자 수는 총 6,359명으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3,636명, 이용시설 종사자가 2,723명이다. 대전광역시는 655개소에 종사하는 6,359명의 종사자 중 특히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종사자 기준 5인 이하 생활시설 98개소, 종사자 243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시설분야가 노숙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사회복지 등 너무 다양하다보니 실제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로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비스 대상의 실태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태조사의 목적은 크게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서비스의 개발이나



보완을 위한 작업에 앞서 대상 집단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또는 서비스 대상자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실천을 계획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자원배분 등 사회적 책임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현재 상태나 특성, 욕구 등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절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은 총 655개소이며, 이 중 생활시설이 259개소, 이용시설이 396개소이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이번에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즉, 2016년도의 시범사업은 생활시설 중 종사자 기준 5인 이하 사회복지시설이 사업대상이다. 총 655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259개소로 한정하고, 이에 종사자 기준 5인 이하 생활시설로 한정할 경우 조사대상 시설은 총 98개소 243명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업수행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47개소와 아동복지시설 18개소 총 65개소 136명을 우선 한정하여 실시하고 실태조사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만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 표 1-2-1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노숙인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정신요양	사회복귀	
											시설 수
	생활시설	259	5	0	0	124	64	11	30	4	21
	이용시설	396	3	6	21	128	74	11	147	0	6
종사자 수	계	6,359	59	49	221	3,723	1,393	119	579	131	85
	생활시설	3,636	43	0	0	2,491	636	55	239	131	41
	이용시설	2,723	16	49	221	1,232	757	64	340	0	44

〈 표 1-2-2 〉 종사자 기준 5인 이하 생활시설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생활시설					
		노숙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사회복귀
시설 수	98	4	3	47	7	18	19
종사자 수	243	17	25	90	26	46	39



## 2. 조사내용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 일반현황, 종사자(근로자) 현황, 이용자(생활인) 현황, 대체인력활용 현황, 업무공백 현황,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욕구, 대체인력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1-2-3 〉 조사 내용

영역	항목
시설 일반현황	시설명, 설립년도, 소재지, 운영법인, 근로형태, 사회보험 가입 현황, 주말 운영 여부, 주말 운영 시 어려운 점, 주말 운영 않는 이유
종사자(근로자) 현황	성, 연령, 교육수준, 전공분야, 근무형태, 출근유형, 급여지급 형태, 현 기관 근무경력, 연차 유급휴가 사용실태, 주된 근로시간
이용자(생활인) 현황	거주인원,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만성질환 현황, 입주기간, 낮 시간 외부활동 여부 및 참여분야, 주말 시설 이용 여부, 보호자 유무
대체인력활용 현황	대체인력 채용 경험 및 인원(최근 3년간), 대체인력 고용의 어려움, 업무의 수준, 업무 부담 해소 정도,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
업무공백 현황	연가, 특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병가, 교육,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현황(2015~2016년), 종사자 부재 시 이용자 지원 방법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욕구	결혼 등으로 인한 종사자 퇴사 여부,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필요성,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영역, 업무대체 가능성, 도움 영역 우선순위, 대체인력지원 필요 근로시간 및 우선순위, 대체인력 파견 시간단위의 적절성, 최소 1회 신청(이용) 시간,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한 일수(2016년 4/4분기, 2017년), 대체인력이 주로 수행할 업무
대체인력에 대한 욕구	대체인력으로 적합한 성, 연령대, 경력, 대체인력 부여 업무 수준, 대체인력에게 필요한 자질, 대체인력의 자격 수준, 대체인력 인건비의 적절성, 주말 대체인력 인건비의 적절성, 야간 대체인력 인건비의 적절성, 대체인력 교육 내용, 교육 이수 시간

### 3.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는 기관 대상 실태조사로 시설별 1부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은 시설용 조사표를 각 시설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시설의 대표자 또는 인사담당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한 후 반송봉투를 이용한 우편으로 반송하도록 하였다. 우편조사의 경우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편발송 후 전화를 통해 실태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조사표가 미 회수된 시설을 확인하여 전화상담을 통해 조사표가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관리자가 조사표의 응답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조사항목 중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한 문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북에 따라 부호화한 후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자료입력이 완료된 후 입력 에러 확인, 아 이디 오류 확인, 범주 에러 확인, 로직 에러 확인, 산식 에러 확인 등의 자료 확인 작업을 통해 최종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하였다. 분석방법은 주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필요시 평균 등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 제2장 조사대상 시설의 특성

조사대상 시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시설 유형, 설립년도, 시설 소재지, 시설 운영주체, 시설 근로형태, 시설 사회보험 가입현황, 시설 주말 운영 현황), 종사자 현황(성, 연령, 교육수준, 전공, 근무형태, 출근유형, 급여형태, 근무경력, 연차휴가, 주된 근로시간), 이용자 현황(성, 연령, 장애 및 질병 현황, 입주기간, 외부활동 참여 현황, 주말 시설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 제1절 조사대상 시설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시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설 유형, 설립년도, 시설 소재지, 시설 운영주체, 시설 근로형태, 시설 사회보험 가입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주말 운영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 1. 시설 유형

조사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은 공동생활가정이 66.7%(30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기보호시설이 31.1%(14개소), 유형별 거주시설이 2.2%(1개소)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94.0%(17개소)로 가장 많고, 자립지원시설이 6.0%(1개소)로 나타났다.

〈 표 2-1-1 〉 시설 유형

단위 : 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공동생활가정	30	66.7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7	94.0
단기보호시설	14	31.1	자립지원시설	1	6.0
유형별 거주시설	1	2.2	계	18	100.0
계	45	100.0			

## 2. 시설 설립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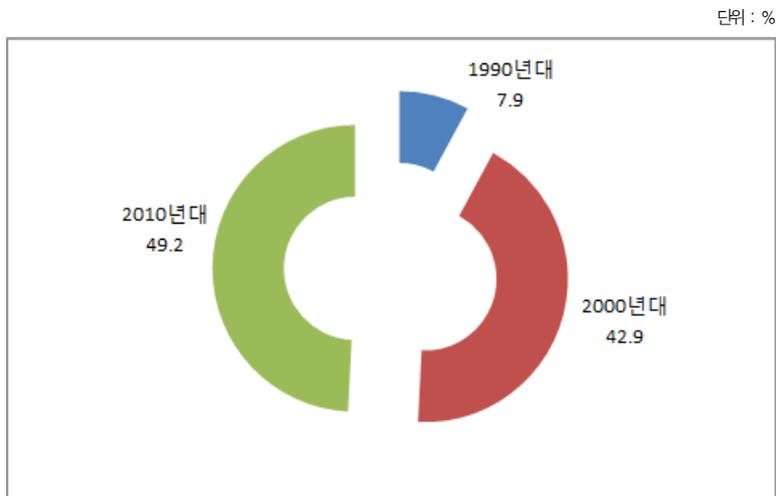
조사대상 시설의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2010년대에 건립된 시설은 49.2%(31개소)로 가장 많았고, 2000년대에 설립된 시설은 42.9%(27개소), 1990년대에 설립된 시설은 7.9%(5개소)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2010년대에 설립된 시설은 51.1%(23개소), 2000년대에 설립된 시설은 42.2%(19개소), 1990년대에 설립된 시설은 6.7%(3개소)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2010년대에 설립된 시설은 44.4%(8개소), 2000년대에 설립된 시설은 44.4%(8개소), 1990년대에 설립된 시설은 11.1%(2개소)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시설이 2000년대 이후에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

〈 표 2-1-2 〉 시설 설립년도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990년대	5	7.9	3	6.7	2	11.1
2000년대	27	42.9	19	42.2	8	44.4
2010년대	31	49.2	23	51.1	8	44.4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2-1-1 ] 시설 설립년도



### 3. 시설 소재지

조사대상 시설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동구 33.3%(21개소), 중구 20.6%(13개소), 유성구 19.0%(12개소), 대덕구 14.3%(9개소), 서구 12.7%(8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동구 40.0%(18개소), 대덕구 17.8%(8개소), 중구와 서구가 각각 15.6%(7개소), 유성구 11.1%(5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성구 38.9%(7개소), 중구 33.3%(6개소), 동구 16.7%(3개소), 서구와 대덕구가 각각 5.6%(1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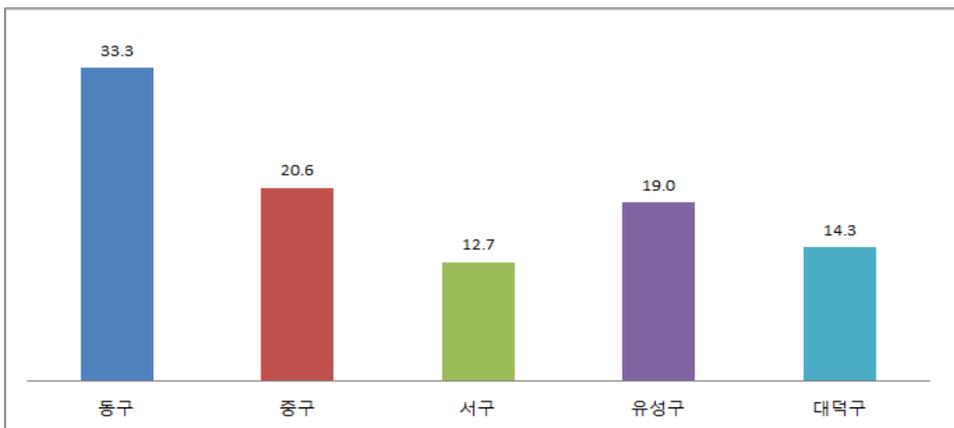
〈 표 2-1-3 〉 시설 소재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구	21	33.3	18	40.0	3	16.7
중구	13	20.6	7	15.6	6	33.3
서구	8	12.7	7	15.6	1	5.6
유성구	12	19.0	5	11.1	7	38.9
대덕구	9	14.3	8	17.8	1	5.6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2-1-2 ] 시설 소재지

단위 : %



#### 4. 시설 운영주체

조사대상 시설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개인 운영 시설이 73.0%(46개소), 법인 운영 시설이 27.0%(17개소)로 나타나 개인 운영 시설이 3/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개인 운영 시설이 73.3%(33개소), 법인 운영 시설이 26.7%(12개소)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개인 운영 시설이 72.2%(13개소), 법인 운영 시설이 27.8%(5개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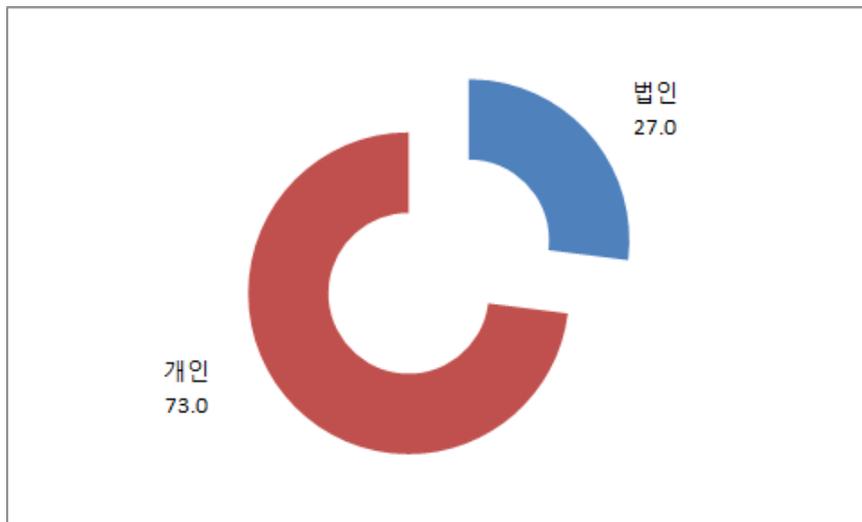
〈 표 2-1-4 〉 시설 운영주체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법인 운영 시설	17	27.0	12	26.7	5	27.8
개인 운영 시설	46	73.0	33	73.3	13	72.2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2-1-3 ] 시설 운영주체

단위: %



## 5. 시설 근로형태

조사대상 시설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에만 근무하는 전일제가 42.9%(27개소), 일정기간마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근무하는 교대제가 14.3%(9개소), 전일제와 교대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42.9%(27개소)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전일제 46.7%(21개소), 교대제 15.6%(7개소), 전일제+교대제 37.8%(17개소)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전일제 33.3%(6개소), 교대제 11.1%(2개소), 전일제+교대제 55.6%(10개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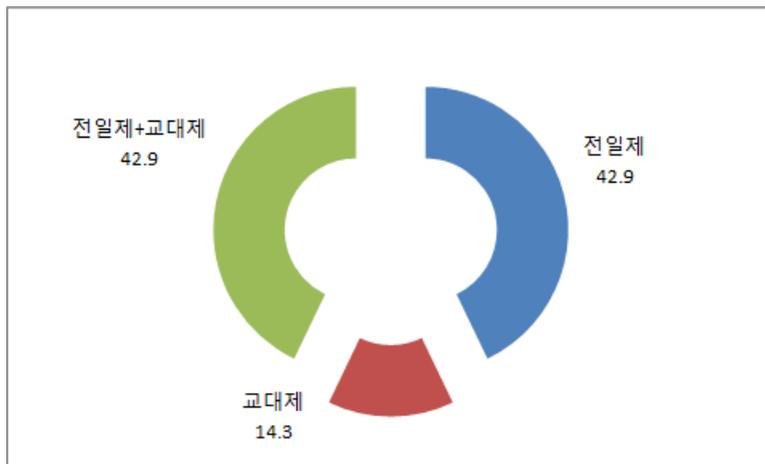
〈 표 2-1-5 〉 시설 근로형태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일제	27	42.9	21	46.7	6	33.3
교대제	9	14.3	7	15.6	2	11.1
전일제+교대제	27	42.9	17	37.8	10	55.6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2-1-4 ] 시설 근로형태

단위 : %





## 6. 시설의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

조사대상 시설의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9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보험 81.0%,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사고배상책임보험이 각각 71.4%, 상해보험 68.3%, 화재보험 12.7%, 신용보증보험 3.2%, 영업배상책임보험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91.1%, 고용보험 73.3%, 산업재해보상보험 68.9%, 상해보험과 사고배상책임보험이 각각 66.7%, 화재보험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각각 100.0%로 모두 가입한 상태이며, 사고배상책임보험 83.3%, 산업재해보상보험 77.8%, 상해보험 72.2%, 화재보험 16.7%, 신용보증보험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1-6 〉 시설의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중복응답)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N=63)		장애인복지시설 (N=45)		아동복지시설 (N=1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국민연금	59	93.7	41	91.1	18	100.0
건강보험	59	93.7	41	91.1	18	100.0
고용보험	51	81.0	33	73.3	18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	45	71.4	31	68.9	14	77.8
상해보험	43	68.3	30	66.7	13	72.2
사고배상책임보험	45	71.4	30	66.7	15	83.3
화재보험	8	12.7	5	11.1	3	16.7
신용보증보험	2	3.2	1	2.2	1	5.6
영업배상책임보험	1	1.6	1	2.2	0	0.0

주) 중복응답이므로 백분율의 합이 100%가 아님.

## 7. 시설 주말 운영 현황

조사대상 시설의 주말 운영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63개 시설 중 90.0%(57개소)가 주말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0.0%(6개소)는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시설 6개소는 모두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아동복지시설 18개소는 모두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다.

〈 표 2-1-7 〉 시설의 주말 운영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운영함	57	90.0	39	86.7	18	100.0
운영하지 않음	6	10.0	6	13.3	0	0.0
계	63	100.0	45	100.0	18	100.0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없어서(66.7%), 법인(시설)의 원칙이기 때문과 시설에 머무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각각 16.7%)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시설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39개소를 대상으로 주말 운영 시 어려운 부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이 46.2%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체인력 구하기 28.2%, 이용자 안전문제 15.4%, 직원관리와 기타가 각각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1-8 〉 주말 운영 시 어려운 부분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백분율
직원 관리	2	5.1
대체인력 구하기	11	28.2
주말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	18	46.2
이용자 안전문제	6	15.4
기타	2	5.1
계	39	100.0



## 제2절 조사대상 시설의 종사자(근로자) 현황

조사대상 시설 종사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종사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전공, 근무경력, 근무형태, 출근유형, 급여지급 형태, 주된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을 조사하였다.

### 1.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 시설 종사자의 성별은 여성이 64.7%, 남성이 35.3%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모두 여성 종사자가 각각 58.0%, 78.2%로 나타나 남성 종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연령대는 50대가 3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40대 27.5%, 30대 22.2%, 20대 12.0%, 60대 이상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40대가 3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25.9%, 50대 24.1%, 20대 9.8%, 60대 이상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50대가 4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40대 18.2%, 20대 16.4%, 30대 14.5%, 60대 이상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2-1 〉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남성	59	35.3	47	42.0	12	21.8
	여성	108	64.7	65	58.0	43	78.2
연령대	20대	20	12.0	11	9.8	9	16.4
	30대	37	22.2	29	25.9	8	14.5
	40대	46	27.5	36	32.1	10	18.2
	50대	51	30.5	27	24.1	24	43.6
	60대 이상	13	7.8	9	8.0	4	7.3
	계	167	100.0	112	100.0	55	100.0

## 2. 종사자의 교육수준 및 전공 현황

### 1) 종사자의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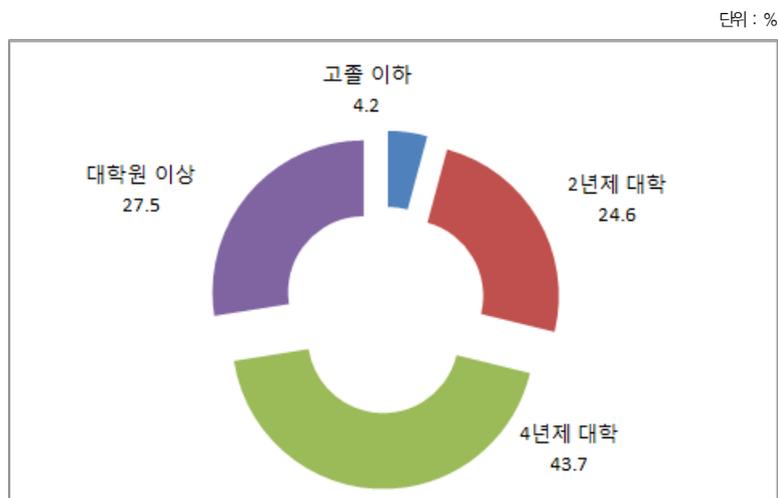
조사대상 시설 종사자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이 4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 이상 27.5%, 2년제 대학 24.6%, 고졸 이하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 45.5%, 대학원 이상 25.9%, 2년제 대학 24.1%, 고졸 이하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 40.0%, 대학원 이상 30.9%, 2년제 대학 25.5%, 고졸 이하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2-2 〉 종사자의 교육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고졸 이하	7	4.2	5	4.5	2	3.6
2년제 대학	41	24.6	27	24.1	14	25.5
4년제 대학	73	43.7	51	45.5	22	40.0
대학원 이상	46	27.5	29	25.9	17	30.9
계	167	100.0	112	100.0	55	100.0

[ 그림 2-2-1 ] 종사자의 교육수준





## 2) 종사자의 전공 현황

조사대상 시설 종사자 중 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종사자 160명의 전공을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학 전공이 8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모두 사회복지학 전공이 가장 많아 각각 88.8%, 88.7%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2-3 〉 종사자의 전공 현황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복지시설		구분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회복지학	95	88.8	사회복지학	47	88.7
노인복지학	1	0.9	노인복지학	1	1.9
간호학	1	0.9	기독교교육학	1	1.9
경영학	3	2.8	아동상담학	1	1.9
경제학	1	0.9	유아교육학	1	1.9
식품조리학	1	0.9	재료금속학	1	1.9
신학	1	0.9	컴퓨터공학	1	1.9
심리학	1	0.9	계	53	100.0
의학	1	0.9			
직업재활학	1	0.9			
행정학	1	0.9			
계	107	100.0			

### 3. 종사자의 근무경력

조사대상 시설 종사자의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2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9년 이상 19.2%, 1년 이상~2년 미만 12.0%, 2년 이상~3년 미만 10.2%, 3년 이상~4년 미만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3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이 2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9년 이상 23.2%, 1년 이상~2년 미만 16.1%, 2년 이상~3년 미만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이 3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년 이상~4년 미만 12.7%, 5년 이상~6년 미만과 9년 이상이 각각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은 3년 미만이 56.3%로 절반 이상을, 아동복지시설은 4년 미만이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은 9년 이상이 23.2%로 1/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2-4 〉 종사자의 근무경력

단위 : 명,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49	29.3	29	25.9	20	36.4
1년 이상~2년 미만	20	12.0	18	16.1	2	3.6
2년 이상~3년 미만	17	10.2	16	14.3	1	1.8
3년 이상~4년 미만	16	9.6	9	8.0	7	12.7
4년 이상~5년 미만	6	3.6	4	3.6	2	3.6
5년 이상~6년 미만	9	5.4	3	2.7	6	10.9
6년 이상~7년 미만	7	4.2	2	1.8	5	9.1
7년 이상~8년 미만	8	4.8	4	3.6	4	7.3
8년 이상~9년 미만	3	1.8	1	0.9	2	3.6
9년 이상	32	19.2	26	23.2	6	10.9
계	167	100.0	112	100.0	55	100.0

#### 4. 종사자 근무 현황

조사대상 시설 종사자의 근무형태를 상근과 비상근으로 조사한 결과, 상근이 85.0%로 대부분이지만 비상근도 15.0%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상근이 88.4%로 비상근 11.6%보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상근이 78.2%로 비상근 21.8%보다 많지만 특히 아동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비상근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출근유형은 출퇴근이 63.5%로 가장 많고, 시설상주 28.7%, 필요시 출근 7.8%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출퇴근이 61.6%, 시설상주 30.4%, 필요시 출근 8.0%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출퇴근이 67.3%, 시설상주 25.5%, 필요시 출근 7.3%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의 급여지급 형태를 살펴보면 보조금(유급) 근로자가 8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부담(유급) 근로자 11.4%, 무급 근로자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유급) 근로자가 72.3%, 자부담(유급) 근로자 17.0%, 무급 근로자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유급) 근로자가 96.4%, 무급 근로자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28% 정도는 시설의 자부담 종사자이거나 무급 종사자로 나타났다.

〈 표 2-2-5 〉 종사자의 근무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근무형태	상근	142	85.0	99	88.4	43	78.2
	비상근	25	15.0	13	11.6	12	21.8
출근유형	출퇴근	106	63.5	69	61.6	37	67.3
	시설상주	48	28.7	34	30.4	14	25.5
	필요시 출근	13	7.8	9	8.0	4	7.3
급여지급 형태	보조금(유급)	134	80.2	81	72.3	53	96.4
	자부담(유급)	19	11.4	19	17.0	0	0.0
	무급	14	8.4	12	10.7	2	3.6
계	167	100.0	112	100.0	55	100.0	

## 5. 종사자의 주된 근로시간

조사대상 시설 종사자의 주된 근로시간을 요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일(상주) 근로가 37.7%로 가장 많고, 주중(월~금) 근로 36.5%, 기타 근로 22.8%, 주말(토~일) 근로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간과 야간을 비슷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4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간근무 중심 41.3%, 야간근무 중심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주된 근로시간을 요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일(상주) 근로가 4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중 근로 35.7%, 주말 근로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간과 야간을 비슷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4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간근무 중심 40.2%, 야간근무 중심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주된 근로시간을 요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중 근로가 3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매일(상주) 근로 32.7%, 기타 근로 2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간과 야간을 비슷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50.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간근무 중심 43.6%, 야간근무 중심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2-6 〉 종사자의 주된 근로 시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요일	주중(월~금)	61	36.5	40	35.7	21	38.2
	주말(토~일)	5	3.0	5	4.5	0	0.0
	매일(상주)	63	37.7	45	40.2	18	32.7
	기타	38	22.8	22	19.6	16	29.1
시간	주간근무 중심	69	41.3	45	40.2	24	43.6
	야간근무 중심	21	12.6	18	16.1	3	5.5
	주간야간을 비슷하게 근무	77	46.1	49	43.8	28	50.9
계	167	100.0	112	100.0	55	100.0	

## 6. 종사자 연차 유급휴가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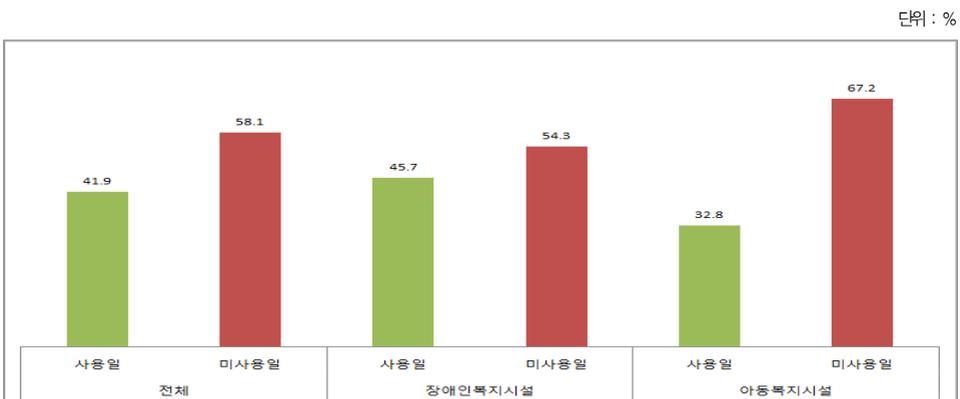
조사대상 시설 종사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는 평균 17.9일로 나타났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평균 7.5일, 미 사용일수는 평균 10.4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 중 41.9%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평균 17.5일로 나타났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평균 8.0일, 미 사용 일수는 평균 9.5일이다. 이는 종사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 중 45.7%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평균 18.9일로 나타났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평균 6.2일, 미 사용 일수는 평균 12.7일이다. 이는 종사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 중 32.8%를 사용한 것이다.

〈 표 2-2-7 〉 종사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단위 : 일, %

구분		평균	백분율
전체	사용가능일	17.9	100.0
	사용일	7.5	41.9
	미사용일	10.4	58.1
장애인복지시설	사용가능일	17.5	100.0
	사용일	8.0	45.7
	미사용일	9.5	54.3
아동복지시설	사용가능일	18.9	100.0
	사용일	6.2	32.8
	미사용일	12.7	67.2

[ 그림 2-2-2 ] 종사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제3절 이용자(생활인) 현황

조사대상 시설의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및 만성질환, 입주기 간, 외부활동 참여 현황, 주말 시설 이용, 보호자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 1. 이용자 성별 및 연령

##### 1)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성별 및 연령

조사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는 264명으로 시설별 평균 5.87명이 이용(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65.1%, 여성이 34.9%이다. 연령대는 10세 미만이 3.8%, 10대 15.9%, 20대 35.2%, 30대 17.0%, 40대 15.2%, 50대 10.2%, 60대 이상 2.7%이다. 즉,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표 2-3-1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72	65.1
	여성	92	34.9
연령	0~9세	10	3.8
	10~19세	42	15.9
	20~29세	93	35.2
	30~39세	45	17.0
	40~49세	40	15.2
	50~59세	27	10.2
	60세 이상	7	2.7
	계	264	100.0



## 2)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성별 및 연령

조사대상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는 총 107명으로 시설별 평균 6.29명이 이용(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65.4%, 여성 34.6%이다. 연령대는 0~4세 5.6%, 5~9세 16.8%, 10~14세 25.2%, 15~19세 31.8%, 20~29세 20.6%로 나타났다.

〈 표 2-3-2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70	65.4
	여성	37	34.6
연령	0~4세	6	5.6
	5~9세	18	16.8
	10~14세	27	25.2
	15~19세	34	31.8
	20~29세	22	20.6
계		107	100.0

## 2. 이용자 장애 및 만성질환 현황

### 1)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장애 특성

조사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7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자폐성장애 12.5%,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각각 4.2%, 정신장애 2.7%, 언어장애 0.8%,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내부장애가 각각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1급이 4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급 34.8%, 3급 20.1%, 4급 0.8%, 5급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3-3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장애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유형	지체장애	11	4.2
	뇌병변장애	11	4.2
	시각장애	1	0.4
	청각장애	1	0.4
	언어장애	2	0.8
	지적장애	197	74.6
	정신장애	7	2.7
	자폐성장애	33	12.5
	안면장애	0	0.0
	내부장애	1	0.4
	장애등급	1급	116
2급		92	34.8
3급		53	20.1
4급		2	0.8
5급		1	0.4
6급		0	0.0
계		264	100.0



## 2)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장애 및 만성질환 현황

조사대상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장애 및 만성질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이 한명도 없는 곳이 41.2%이며, 1명이 있는 곳이 41.2%, 2명이 있는 곳이 17.6%로 나타나 17개 시설 중 10개소에 장애아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83.4%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가 각각 8.3%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정기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만성질환 아동이 있는 시설은 23.5%로 이는 17개소 중 4개소에 이르며, 주된 만성질환은 ADHD, 뇌전증, 비염 및 척추 교정,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3-4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의 장애 및 만성질환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아동 수	0명	7	41.2
	1명	7	41.2
	2명	3	17.6
	계	17	100.0
장애유형	지적장애	10	83.4
	뇌병변장애	1	8.3
	정신장애	1	8.3
	계	12	100.0
만성질환 아동 여부	없음	13	76.5
	있음	4	23.5
	계	17	100.0
만성질환 유형	ADHD	2	40.0
	뇌전증	1	20.0
	비염 및 척추 교정	1	20.0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1	20.0
	계	5	100.0

### 3. 이용자 입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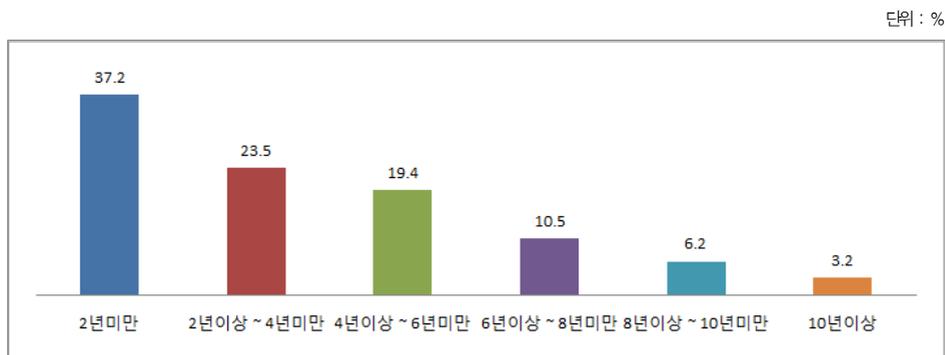
조사대상 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입주기간은 2년 미만이 37.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년 이상~4년 미만이 23.5%, 4년 이상~6년 미만이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입주기간을 살펴보면 2년 미만이 3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년 이상~4년 미만 23.1%, 4년 이상~6년 미만 15.9%, 6년 이상~8년 미만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4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입주기간을 살펴보면 2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4년 이상~6년 미만 28.0%, 2년 이상~4년 미만 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10명 중 5명 이상이 4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 표 2-3-5 〉 이용자(생활인)의 입주기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년 미만	138	37.2	104	39.4	34	31.8
2년 이상~4년 미만	87	23.5	61	23.1	26	24.3
4년 이상~6년 미만	72	19.4	42	15.9	30	28.0
6년 이상~8년 미만	39	10.5	30	11.4	9	8.4
8년 이상~10년 미만	23	6.2	15	5.7	8	7.5
10년 이상	12	3.2	12	4.5	0	0.0
계	371	100.0	264	100.0	107	100.0

[ 그림 2-3-1 ] 이용자(생활인)의 입주기간



#### 4. 이용자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내용

##### 1)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내용

조사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외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49.6%로 절반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외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활동의 내용은 학교가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재활시설 23.7%, 주간보호시설 11.5%, 일반직장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타 응답도 16.8%로 나타나 다양한 외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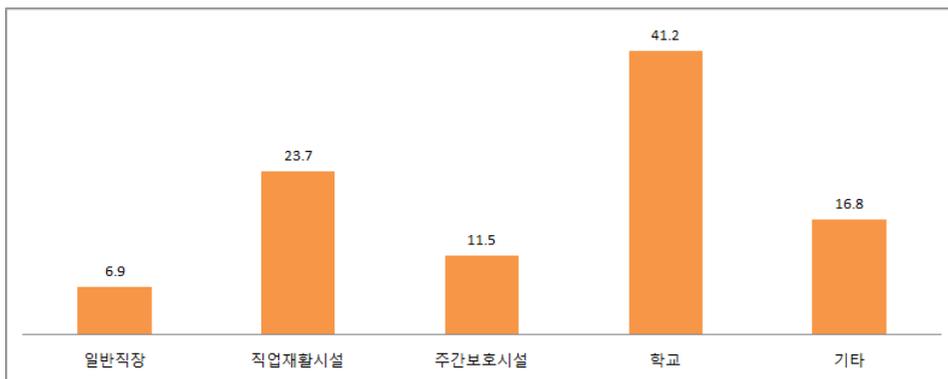
〈 표 2-3-6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내용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참여 여부	참여	131	49.6
	미참여	133	50.4
	계	264	100.0
활동 내용	일반직장	9	6.9
	직업재활시설	31	23.7
	주간보호시설	15	11.5
	학교	54	41.2
	기타	22	16.8
	계	131	100.0

[ 그림 2-3-2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낮 시간 외부활동 내용

단위 : %



## 2)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내용

조사대상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이용자 모두 외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내용으로는 대부분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4.3%, 중학교 19.6%, 어린이집 및 유치원 16.8%, 고등학교 15.9%, 대학교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 이외의 기타 활동도 14.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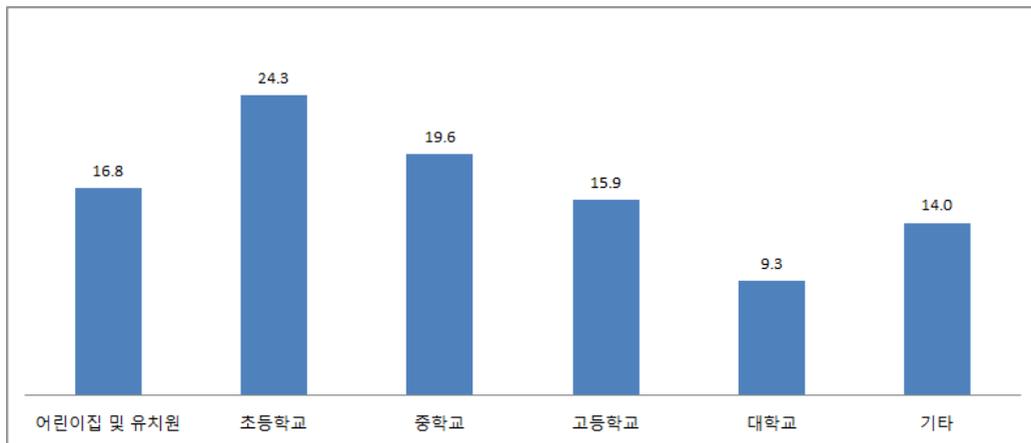
〈 표 2-3-7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 여부 및 활동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참여 여부	참여	107	100.0
	미참여	0	0.0
	계	107	100.0
활동 분야	어린이집 및 유치원	18	16.8
	초등학교	26	24.3
	중학교	21	19.6
	고등학교	17	15.9
	대학교	10	9.3
	기타	15	14.0
	계	107	100.0

[ 그림 2-3-3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낮 시간 외부활동 내용

단위: %



### 5.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주말 시설 이용 여부 및 보호자 유무

조사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주말 시설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가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9.5%는 주말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보호자가 있는 이용자가 85.6%로 대부분이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14.4%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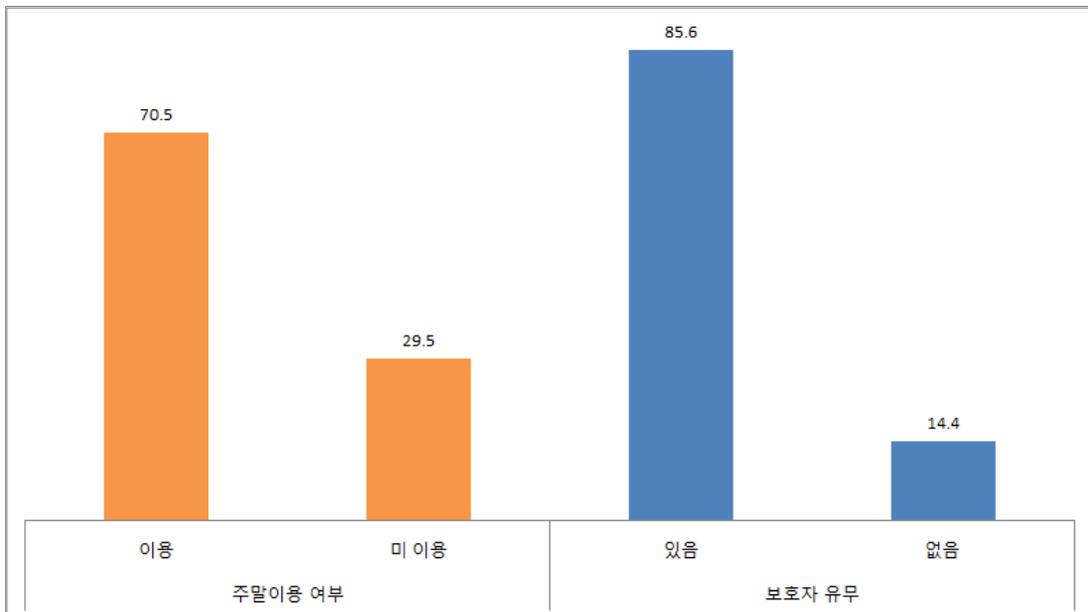
〈 표 2-3-8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생활인)의 주말 시설 이용 여부 및 보호자 유무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주말 이용 여부	이용	186	70.5
	미이용	78	29.5
보호자 유무	있음	226	85.6
	없음	38	14.4
계		264	100.0

[ 그림 2-3-4 ] 장애인분야 이용자(생활인) 주말 시설 이용 여부 및 보호자 유무

단위: %



## 제3장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욕구

조사대상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활용현황(대체인력 채용경험, 대체인력 고용의 어려움, 업무의 수준, 업무부담 해소 정도,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 업무공백 현황(2015~2016년 유형별 업무공백 현황),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 필요 영역, 업무 대체 가능 정도, 필요 근로 시간 대, 파견 기간, 담당 업무영역), 대체인력에 대한 욕구(선호하는 성별, 연령대, 경력, 자질, 인건비, 교육) 등을 조사하였다.

### 제1절 대체인력 활용현황

대체인력 활용현황은 대체인력 채용경험, 대체인력 고용의 어려움, 업무의 수준, 업무부담 해소 정도,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 1. 대체인력 채용경험

조사대상 시설의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63개 시설 중 12개 시설에서 채용한 경험이 있어 채용 경험률은 19.0%이다. 그리고 총 채용인원은 45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9개 시설 17명, 2015년 8개 시설 15명, 2016년 8개 시설 13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45개 시설 중 8개 시설에서 채용한 경험이 있어 채용 경험률은 17.8%이고, 총 채용인원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6개 시설 6명, 2015년 7개 시설 7명, 2016년 6개 시설 6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18개 시설 중 4개 시설에서 채용한 경험이 있어 채용 경험률은 22.2%이고, 총 채용인원은 2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3개 시설 11명, 2015년 1개 시설 8명, 2016년 2개 시설 7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3-1-1 〉 대체인력 채용경험

단위 : 개소, %, 명

구분		채용경험 있음*		인원	
		빈도	백분율	합계	평균
전체	2014년	9	14.3	17	1.89
	2015년	8	12.7	15	1.88
	2016년	8	12.7	13	1.63
	계	63개 시설 중 12개 시설이 채용경험 있음(19.0%)		45	3.75
장애인복지시설	2014년	6	13.3	6	1.00
	2015년	7	15.6	7	1.00
	2016년	6	13.3	6	1.00
	계	45개 시설 중 8개 시설이 채용경험 있음(17.8%)		19	2.38
아동복지시설	2014년	3	16.7	11	3.67
	2015년	1	5.6	8	8.00
	2016년	2	11.1	7	3.50
	계	18개 시설 중 4개 시설이 채용경험 있음(22.2%)		26	6.50

\* 2014년, 2015년, 2016년 각각에 대한 채용경험의 응답임.

[ 그림 3-1-1 ] 대체인력 채용 경험률

단위 : %



## 2. 대체인력 채용의 가장 큰 어려움

대체인력 채용경험이 있는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 시 느꼈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부담이 58.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기간만 일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25.0%, 해당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부담이 50.0%로 가장 많고, 해당 기간만 일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37.5%, 해당 업무 수행 능력 갖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12.5%의 순이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부담 75.0%, 해당 업무 수행능력 갖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25.0%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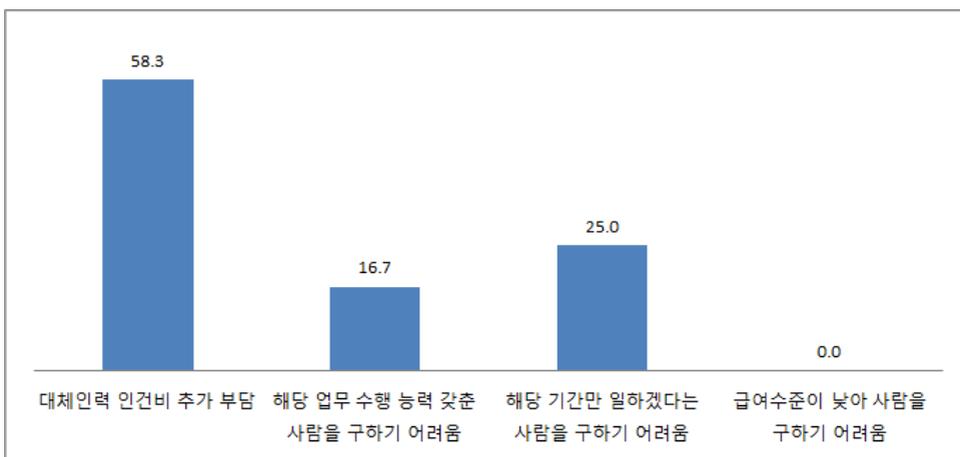
〈 표 3-1-2 〉 대체인력 채용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부담	7	58.3	4	50.0	3	75.0
해당 업무 수행 능력 갖춘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2	16.7	1	12.5	1	25.0
해당 기간만 일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3	25.0	3	37.5	0	0.0
급여수준이 낮아 사람 구하기 어려움	0	0.0	0	0.0	0	0.0
계	12	100.0	8	100.0	4	100.0

[ 그림 3-1-2 ] 대체인력 채용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



### 3.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에게 맡긴 업무의 수준

대체인력 채용경험이 있는 시설에서 대체인력에게 맡긴 업무의 수준을 살펴보면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이 5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휴가자가 했던 업무와 동일한 수준과 휴가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이 각각 25.0%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이 50.0%, 휴가자가 했던 업무와 동일한 수준 37.5%, 휴가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 12.5%이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휴가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과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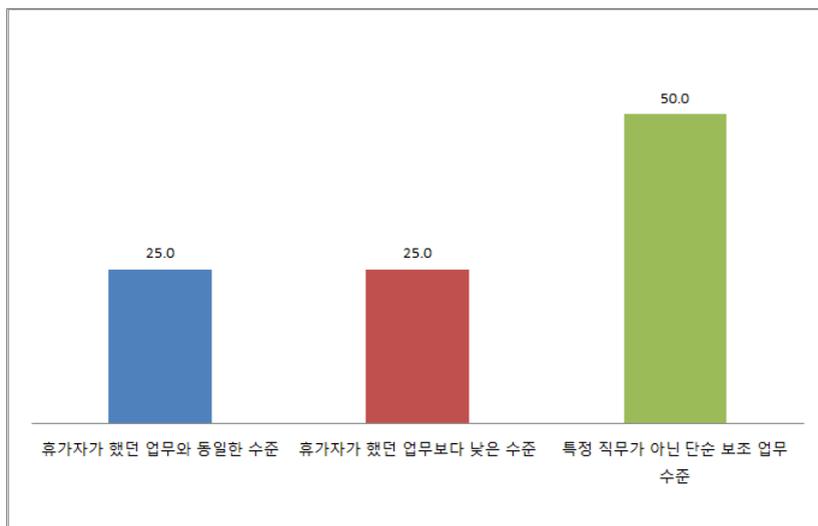
〈 표 3-1-3 〉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에게 맡긴 업무의 수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휴가자가 했던 업무와 동일한 수준	3	25.0	3	37.5	0	0.0
휴가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	3	25.0	1	12.5	2	50.0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	6	50.0	4	50.0	2	50.0
계	12	100.0	8	100.0	4	100.0

[ 그림 3-1-3 ]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에게 맡긴 업무의 수준

단위 : %



#### 4.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부담을 해소한 정도

대체인력 채용경험이 있는 시설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부담을 해소한 정도를 살펴보면, 해소하였다는 응답이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도 해소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75.0%로 높게 나타나 대체인력의 활용이 업무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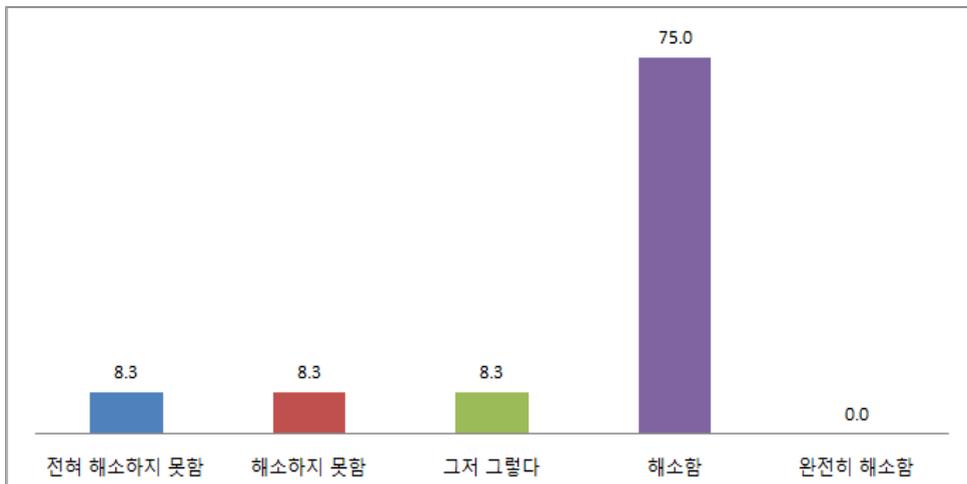
〈 표 3-1-4 〉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부담을 해소한 정도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해소하지 못함	1	8.3	1	12.5	0	0.0
해소하지 못함	1	8.3	0	0.0	1	25.0
그저 그렇다	1	8.3	1	12.5	0	0.0
해소함	9	75.0	6	75.0	3	75.0
완전히 해소함	0	0.0	0	0.0	0	0.0
계	12	100.0	8	100.0	4	100.0

[ 그림 3-1-4 ]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부담을 해소한 정도

단위 : %



### 5.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

대체인력 채용경험이 있는 시설의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자부담이 83.3%로 가장 많고, 보조금 33.3%, 기타 16.7%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기관이 자부담을 하였고, 보조금은 25.0%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금 50.0%, 자부담 50.0%, 기타 50.0% 등의 방법을 통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마련하였다.

〈 표 3-1-5 〉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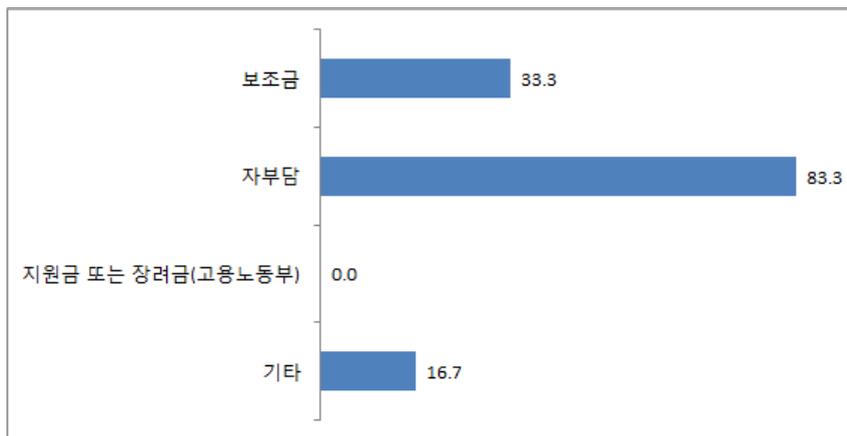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N=12)		장애인복지시설(N=8)		아동복지시설(N=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보조금	4	33.3	2	25.0	2	50.0
자부담	10	83.3	8	100.0	2	50.0
지원금 또는 장려금(고용노동부)	0	0.0	0	0.0	0	0.0
기타	2	16.7	0	0.0	2	50.0

주) 중복응답이므로 백분율의 합이 100%가 아님.

[ 그림 3-1-5 ]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단위 : %



## 제2절 업무 공백 현황

조사대상 시설의 업무공백 현황으로 2015년과 2016년에 사용가능했던 휴가 일수와 실제 사용 일수, 미 사용 일수 등을 조사하였다. 휴가 사용 자체가 업무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휴가 사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시설 여건 상 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종사자의 처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휴가 자체를 업무공백으로 인식하고 조사하였다.

### 1. 2015년 업무공백 현황

조사대상 시설의 모든 종사자에게 부여된 휴가를 기준으로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기관 당 평균 36.5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5.5일,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1.0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70.0%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30.0%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기관 당 평균 41.6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31.1일, 미 사용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0.5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74.8%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25.2%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4.8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2.7일,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2.1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51.2%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48.8%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휴가의 형태 중 연가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다른 유형의 휴가 형태는 사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연가를 기준으로 사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연가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7.2일이며,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5.0일, 미 사용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2.2일이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55.2%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44.8%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6.2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5.3일, 미 사용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1.0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58.2%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41.8%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기관 당 평균 30.3일, 실제 사



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4.3일, 미 사용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6.0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47.2%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52.8%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3-2-1 〉 2015년 업무공백 현황(평균)

단위: 일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용 가능 일수	실제 사용 일수	미 사용 일수	사용 가능 일수	실제 사용 일수	미 사용 일수	사용 가능 일수	실제 사용 일수	미 사용 일수
전체	36.5	25.5	11.0	41.6	31.1	10.5	24.8	12.7	12.1
연가(연차휴가)	27.2	15.0	12.2	26.2	15.3	11.0	30.3	14.3	16.0
특별휴가(본인 결혼)	5.6	5.6	0.0	5.6	5.6	0.0	0.0	0.0	0.0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10.4	9.0	1.0	13.3	13.3	0.0	6.0	2.5	3.5
배우자출산휴가	1.7	1.7	0.0	1.7	1.7	0.0	0.0	0.0	0.0
가족돌봄휴직(또는 근로시간 조정)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병가	26.4	26.0	0.4	40.0	40.0	0.0	6.0	5.0	1.0
교육(연수)	3.0	3.0	0.0	1.2	1.2	0.0	12.0	12.0	0.0
육아휴직	0.0	0.0	0.0	0.0	0.0	0.0	0.0	0.0	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출산전후휴가	60.0	60.0	0.0	60.0	60.0	0.0	0.0	0.0	0.0

## 2. 2016년 업무공백 현황

2016년 업무공백 현황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업무공백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시설의 모든 종사자에게 부여된 휴가를 기준으로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기관 당 평균 43.6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4.2일,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9.4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55.5%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44.5%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기관 당 평균 44.7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7.2일, 미 사용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7.4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61.0%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39.0%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기관 당 평균 40.7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6.3일, 미 사용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4.4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40.0%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60.0%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3-2-2 〉 2016년 업무 공백 현황(2016년 1월~8월, 평균)

단위 : 일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용 가능 일수	실제 사용 일수	미 사용 일수	사용 가능 일수	실제 사용 일수	미 사용 일수	사용 가능 일수	실제 사용 일수	미 사용 일수
전체	43.6	24.2	19.4	44.7	27.2	17.4	40.7	16.3	24.4
연가(연차휴가)	27.9	10.4	17.4	28.1	12.2	16.0	27.2	5.7	21.6
특별휴가(본인 결혼)	4.8	3.5	1.3	4.8	3.5	1.3	0.0	0.0	0.0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9.8	8.0	1.8	10.5	10.0	0.5	7.0	0.0	7.0
배우자출산휴가	0.7	0.0	0.7	0.7	0.0	0.7	0.0	0.0	0.0
가족돌봄휴직(또는 근로시간 조정)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병가	28.5	20.0	8.5	26.1	21.9	4.3	45.0	7.0	38.0
교육(연수)	6.0	3.5	2.5	4.7	2.2	2.5	10.0	7.5	2.5
육아휴직	0.0	0.0	0.0	0.0	0.0	0.0	0.0	0.0	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출산전후휴가	54.0	54.0	0.0	45.0	45.0	0.0	90.0	90.0	0.0
기타	1.3	1.3	0.0	1.3	1.3	0.0	0.0	0.0	0.0



다양한 휴가의 형태 중 연가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다른 유형의 휴가 형태는 사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연가를 기준으로 사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연가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7.9일이며,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0.4일, 미 사용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7.4일이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37.4%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62.6%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8.1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2.2일, 미 사용 일수는 기관 당 평균 16.0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43.2%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56.8%는 사용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7.2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기관 당 평균 5.7일, 미 사용 일수는 기관 당 평균 21.6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가 사용 가능했던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률은 20.8%로 나타나 사용 가능한 일수 중 79.2%는 사용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201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공백 예상일수는 기관 당 평균 16.9일로 나타났고, 업무공백 예측이 가능한 연가의 경우 기관 당 평균 10.0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공백 예상일수는 기관 당 평균 9.5일로 나타났고, 업무공백 예측이 가능한 연가의 경우 기관 당 평균 8.8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업무공백 예상일수는 기관 당 평균 34.6일로 나타났고, 업무공백 예측이 가능한 연가의 경우 기관 당 평균 12.6일로 나타났다.

〈 표 3-2-3 〉 2016년 업무공백 예상 일수(2016년 9월~12월, 평균)

단위 : 일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전체	16.9	9.5	34.6
연가(연차휴가)	10.0	8.8	12.6
특별휴가(본인 결혼)	5.5	2.3	15.0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5.8	0.0	8.8
배우자출산휴가	0.0	0.0	0.0
가족돌봄휴직(또는 근로시간 조정)	5.0	0.0	15.0
병가	0.0	0.0	0.0
교육(연수)	7.4	3.4	17.5
육아휴직	40.0	0.0	12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0.0	0.0	0.0
출산전후휴가	0.0	0.0	0.0
기타	0.0	1.0	0.0

### 3. 업무공백 시 이용자 지원 방법

종사자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시 이용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시설장(종사자)의 가족이 지원하는 경우가 4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원가정으로 보내는 경우가 20.6%, 유급대체인력이 지원하는 경우가 19.0%, 시설장(종사자)의 지인이 지원하는 경우와 이용자를 시설장(종사자)의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각각 17.5%, 무급 자원봉사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14.3%, 가까운 공동생활가정(장애인) 종사자가 지원한다가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설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 표 3-2-4 〉 업무공백 시 이용자 지원 방법(중복응답)

단위 : 개수, %

구분	전체 (N=63)		장애인복지시설 (N=45)		아동복지시설 (N=1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용자들끼리 생활하고 있음	5	7.9	4	8.9	1	5.6
유급대체인력이 지원	12	19.0	9	20.0	3	16.7
가까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지원(장애인)	6	9.5	6	13.3	0	0.0
가까운 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장애인)	3	4.8	3	6.7	0	0.0
무급 자원봉사자 지원	9	14.3	6	13.3	3	16.7
유급 자원봉사자 지원	3	4.8	2	4.4	1	5.6
시설장(종사자)의 가족이 지원	27	42.9	22	48.9	5	27.8
시설장(종사자)의 지인이 지원	11	17.5	8	17.8	3	16.7
이용자의 가족이 지원	1	1.6	1	2.2	0	0.0
이용자를 시설장(종사자)의 집으로 데려감	11	17.5	8	17.8	3	16.7
원가정으로 보냄	13	20.6	13	28.9	0	0.0
기타	2	3.2	2	4.4	0	0.0
종사자들이 부재한 경우가 없음	17	27.0	4	8.9	13	72.2

주) 중복응답이므로 백분율의 합이 100%가 아님.

### 제3절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1.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종사자 여부

조사대상 시설의 종사자 중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종사자가 있는 기관은 12.7%이며, 시설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은 15.6%, 아동복지시설은 5.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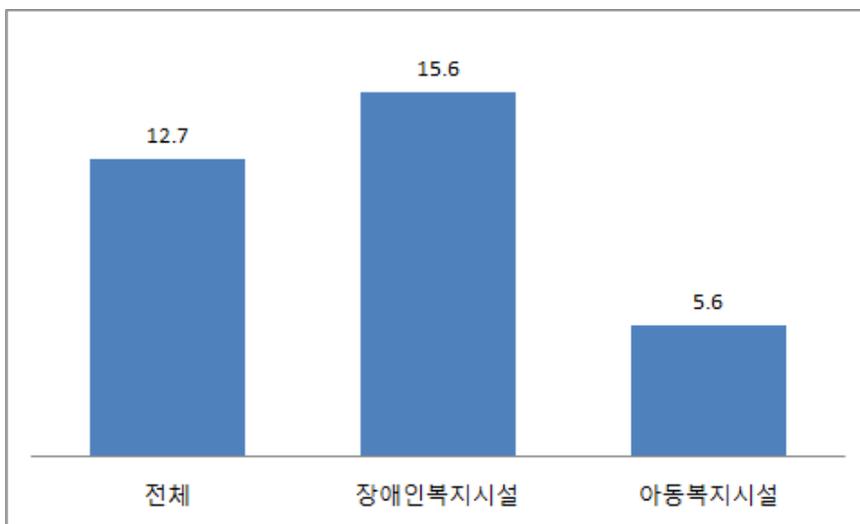
〈 표 3-3-1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종사자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있음	8	12.7	7	15.6	1	5.6
없음	55	87.3	38	84.4	17	94.4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3-1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종사자 비율

단위 : %



## 2. 장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

조사대상 시설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장기적인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2.4%, 필요하다는 응답이 38.1%로 90% 정도는 장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도 필요성(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이 각각 93.4%, 83.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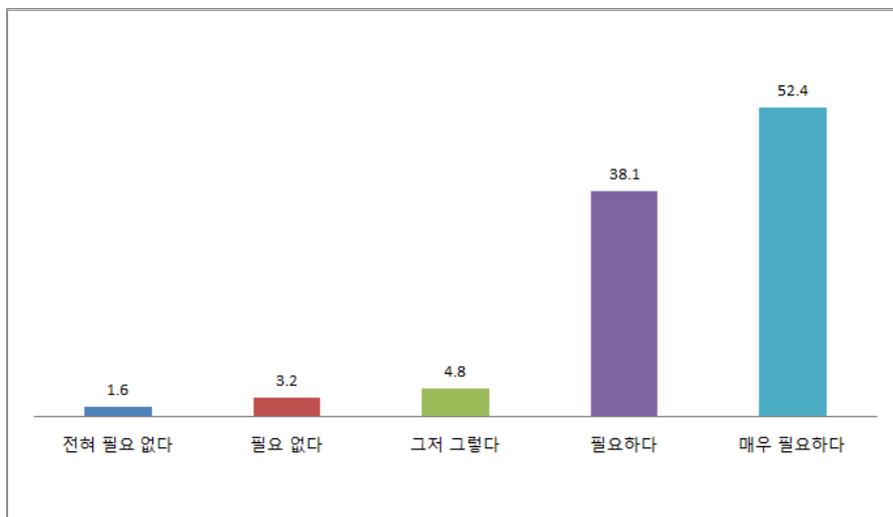
〈 표 3-3-2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장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필요성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필요 없다	1	1.6	1	2.2	0	0.0
필요 없다	2	3.2	1	2.2	1	5.6
그저 그렇다	3	4.8	1	2.2	2	11.1
필요하다	24	38.1	14	31.2	10	55.6
매우 필요하다	33	52.4	28	62.2	5	27.8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3-2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장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필요성

단위 : %



### 3. 단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

조사대상 시설의 병가, 연가, 특별휴가, 교육 등 단기적인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8.7%, 필요하다는 응답이 30.2%로 나타나 89% 정도는 단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도 필요성(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이 각각 91.1%, 8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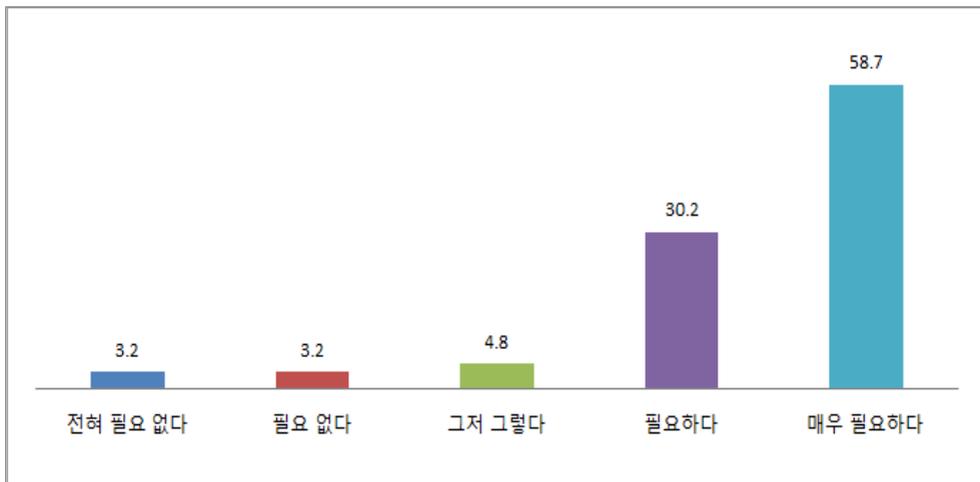
〈 표 3-3-3 〉 병가, 연가, 특별휴가, 교육 등 단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필요성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필요 없다	2	3.2	2	4.4	0	0.0
필요 없다	2	3.2	1	2.2	1	5.6
그저 그렇다	3	4.8	1	2.2	2	11.1
필요하다	19	30.2	11	24.4	8	44.4
매우 필요하다	37	58.7	30	66.7	7	38.9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3-3 ] 병가, 연가, 특별휴가, 교육 등 단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필요성

단위 : %



#### 4. 단기, 장기 업무공백 중 대체인력지원이 더 필요한 영역

단기와 장기 업무공백 중 단기적인 업무공백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81.0%, 장기적인 업무공백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19.0%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업무공백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84.4%, 장기적인 업무공백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15.6%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업무공백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72.2%, 장기적인 업무공백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27.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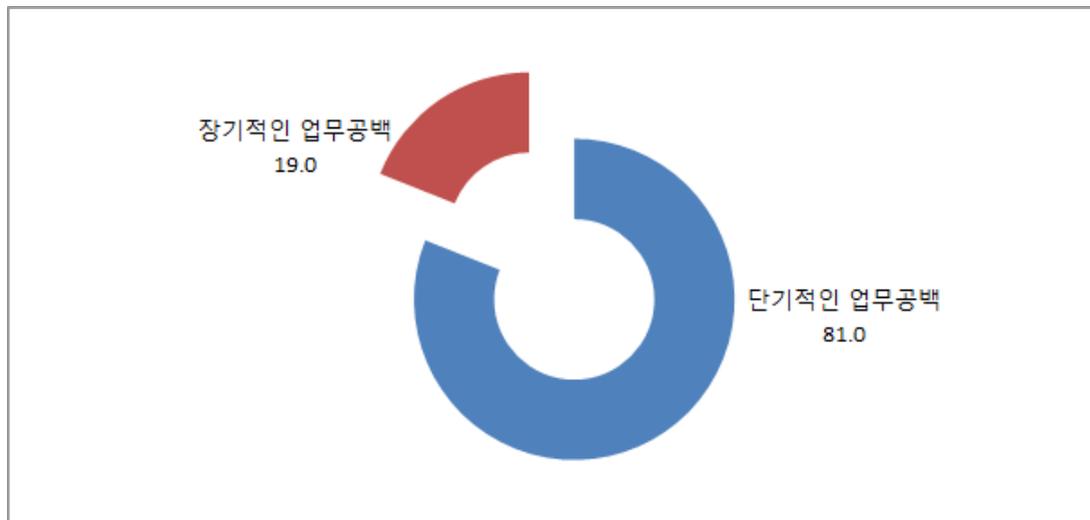
〈 표 3-3-4 〉 단기, 장기 업무공백 중 대체인력지원이 더 필요한 영역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단기적인 업무공백	51	81.0	38	84.4	13	72.2
장기적인 업무공백	12	19.0	7	15.6	5	27.8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3-4 ] 단기, 장기 업무공백 중 대체인력지원이 더 필요한 영역

단위 : %



### 5. 대체인력 활용 시 업무 대체 가능 정도

향후 대체인력을 활용할 시 대체인력이 업무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지 살펴본 결과, 업무의 절반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업무에서 대체 가능 12.7%, 모든 업무에서 대체 가능 9.5%, 대부분의 업무에서 대체 불가능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 업무의 3/4정도는 업무의 특성 상 대체인력이 완벽하게 업무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업무의 절반 정도 대체 가능 80.0%, 대부분의 업무에서 대체 가능 11.1%, 모든 업무에서 대체 가능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업무의 절반 정도 대체 가능 61.1%, 대부분의 업무에서 대체 가능 16.7%, 모든 업무에서 대체 가능 11.1%, 대부분의 업무에서 대체 불가능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동복지시설에 비하여 업무의 대체 가능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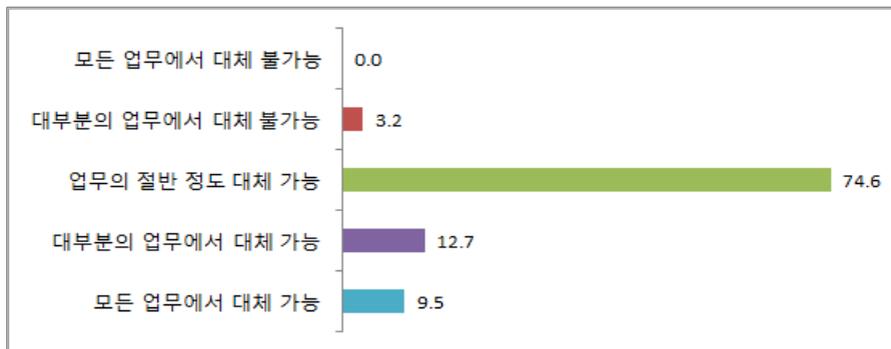
〈 표 3-3-5 〉 대체인력 활용 시 업무 대체 가능 정도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모든 업무에서 대체 불가능	0	0.0	0	0.0	0	0.0
대부분의 업무에서 대체 불가능	2	3.2	0	0.0	2	11.1
업무의 절반 정도 대체 가능	47	74.6	36	80.0	11	61.1
대부분의 업무에서 대체 가능	8	12.7	5	11.1	3	16.7
모든 업무에서 대체 가능	6	9.5	4	8.9	2	11.1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3-5 ] 대체인력 활용 시 업무 대체 가능 정도

단위 :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은 연가가 8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66.7%, 병가 65.1%,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63.5%, 가족돌봄휴직 42.9%, 특별휴가(본인 결혼) 3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연가 82.2%, 교육 71.1%, 병가 62.2%,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60.0%, 가족돌봄휴직 48.9%, 특별휴가(본인 결혼) 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연가 77.8%,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와 병가가 각각 72.2%, 교육 55.6%, 육아휴직 38.9%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3-6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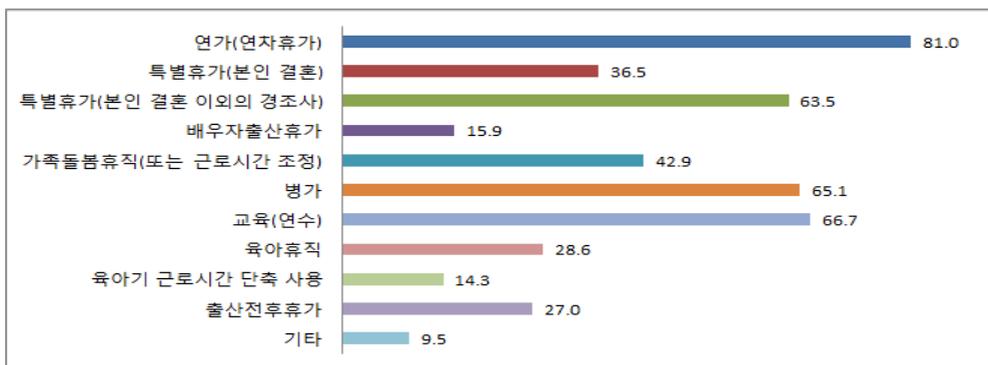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N=63)		장애인복지시설 (N=45)		아동복지시설 (N=1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가(연차휴가)	51	81.0	37	82.2	14	77.8
특별휴가(본인결혼)	23	36.5	18	40.0	5	27.8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40	63.5	27	60.0	13	72.2
배우자출산휴가	10	15.9	6	13.3	4	22.2
가족돌봄휴직(또는 근로시간 조정)	27	42.9	22	48.9	5	27.8
병가	41	65.1	28	62.2	13	72.2
교육(연수)	42	66.7	32	71.1	10	55.6
육아휴직	18	28.6	11	24.4	7	38.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9	14.3	8	17.8	1	5.6
출산전후휴가	17	27.0	13	28.9	4	22.2
기타	6	9.5	5	11.1	1	5.6

주) 중복응답이므로 백분율의 합이 100%가 아님.

[ 그림 3-3-6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중복응답)

단위 :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순위로는 연가가 4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병가 15.9%, 교육 12.7%, 육아휴직 11.1%,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1순위로는 연가 37.8%, 병가 17.8%, 교육 15.6%, 육아휴직 8.9%,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순위는 연가 50.0%, 육아휴직 16.7%, 병가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3-7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 순위

단위 : % (개소)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연가(연차휴가)	41.3	14.5	16.7	37.8	20.5	16.3	50.0	0.0	17.6
특별휴가(본인 결혼)	3.2	9.7	8.3	2.2	9.1	9.3	5.6	11.1	5.9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6.3	22.6	13.3	6.7	13.6	11.6	5.6	44.4	17.6
배우자출산휴가	1.6	1.6	0.0	0.0	0.0	0.0	5.6	5.6	0.0
가족돌봄휴직(또는 근로시간 조정)	1.6	8.1	10.0	2.2	11.4	11.6	0.0	0.0	5.9
병가	15.9	14.5	28.3	17.8	13.6	25.6	11.1	16.7	35.3
교육(연수)	12.7	16.1	18.3	15.6	18.2	18.6	5.6	11.1	17.6
육아휴직	11.1	6.5	1.7	8.9	6.8	2.3	16.7	5.6	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1.6	0.0	0.0	2.2	0.0	0.0	0.0	0.0	0.0
출산전후휴가	1.6	6.5	3.3	2.2	6.8	4.7	0.0	5.6	0.0
기타	3.2	0.0	0.0	4.4	0.0	0.0	0.0	0.0	0.0
계 (개소)	100.0 (63)	100.0 (62)	100.0 (60)	100.0 (45)	100.0 (44)	100.0 (43)	100.0 (18)	100.0 (18)	100.0 (17)

## 6.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근로 시간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근로 시간대를 주중 주간, 주중 야간, 주말 주간, 주말 야간의 4가지 형태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주말 주간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1.0%으로 가장 많았고, 주중 야간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74.6%, 주말 야간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73.0%, 주중 주간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6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주말 주간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6.7%, 주중 야간과 주말 야간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77.8%, 주중 주간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주중 야간과 주말 주간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6.7%로 나타났고, 주중 주간과 주말 야간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1.1%으로 나타났다.

〈 표 3-3-8 〉 근로 시간대별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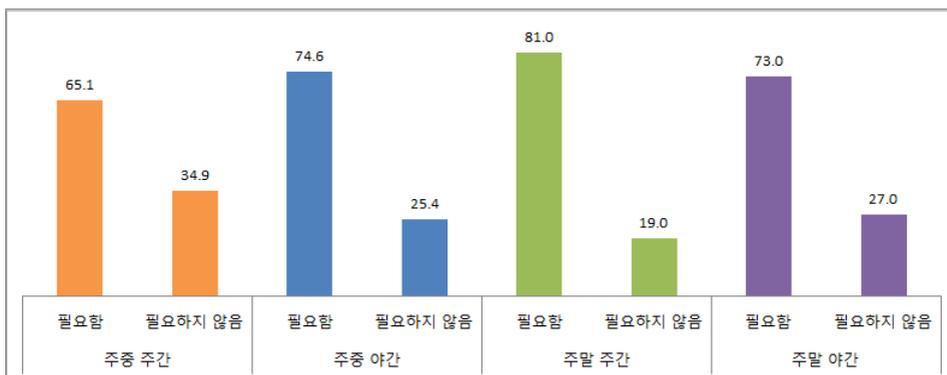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N=63)		장애인복지시설 (N=45)		아동복지시설 (N=1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중 주간	41	65.1	30	66.7	11	61.1
주중 야간	47	74.6	35	77.8	12	66.7
주말 주간	51	81.0	39	86.7	12	66.7
주말 야간	46	73.0	35	77.8	11	61.1

주) 각각의 근로 시간대에 대한 응답임.

[ 그림 3-3-7 ] 근로 시간대별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

단위 : %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시간대(휴게 시간은 고려하지 않음)를 살펴보면 주중 주간의 시작 시간은 9~10시 사이, 종료 시간은 17~18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7~8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주중 야간의 경우에는 시작 시간은 17~18시 사이, 종료 시간은 다음날 5~6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11~12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주말 주간의 시작 시간은 9~10시 사이, 종료 시간은 17~18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8~9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주말 야간의 시작 시간은 17~18시 사이, 종료 시간은 다음날 6~7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12~13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주중 주간의 시작 시간은 9~10시 사이, 종료 시간은 16~17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7~8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주중 야간의 경우에는 시작 시간은 17~18시 사이, 종료 시간은 다음날 5~6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11~12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주말 주간의 시작 시간은 9시, 종료 시간은 17~18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8~9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주말 야간의 시작 시간은 17~18시 사이, 종료 시간은 다음날 6~7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12~13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주중 주간의 시작 시간은 10~11시 사이, 종료 시간은 19시, 총 근무시간은 8~9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주중 야간의 경우에는 시작 시간은 13~14시 사이, 종료 시간은 다음날 2~3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12~13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주말 주간의 시작 시간은 10~11시 사이, 종료 시간은 18~19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8~9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주말 야간의 시작 시간은 15~16시 사이, 종료 시간은 다음날 4~5시 사이, 총 근무시간은 13~14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르게 아동의 학교생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3-9 〉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평균 시간대

단위 : 시, 시간

구분	전체(N=61)			장애인복지시설(N=44)			아동복지시설(N=17)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총 근무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총 근무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총 근무 시간
주중 주간	9.98	17.44	7.46	9.67	16.87	7.20	10.82	19.00	8.18
주중 야간	17.60	5.21	11.71	17.60	5.21	11.71	13.67	2.50	12.83
주말 주간	9.25	17.59	8.27	9.00	17.26	8.26	10.08	18.67	8.33
주말 야간	17.83	6.26	12.51	17.83	6.26	12.51	15.36	4.91	13.55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로는 주중 주간이 3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중 야간 31.1%, 주말 주간 21.3%, 주말 야간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순위로 주중 주간이 3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중 야간 27.3%, 주말 주간 22.7%, 주말 야간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순위로 주중 야간이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중 주간 35.3%, 주말 주간 17.6%, 주말 야간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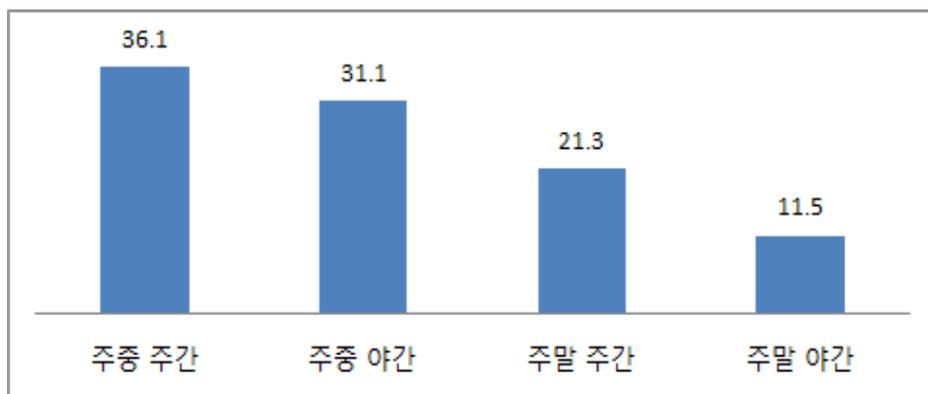
〈 표 3-3-10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대 순위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주중 주간	36.1	7.1	21.4	25.9	36.4	7.3	21.9	18.2	35.3	6.7	20.0	60.0
주중 야간	31.1	21.4	31.0	14.8	27.3	22.0	34.4	18.2	41.2	20.0	20.0	0.0
주말 주간	21.3	30.4	23.8	33.3	22.7	31.7	18.8	40.9	17.6	26.7	40.0	0.0
주말 야간	11.5	41.1	23.8	25.9	13.6	39.0	25.0	22.7	5.9	46.7	20.0	40.0
계 (개소)	100.0 (61)	100.0 (56)	100.0 (42)	100.0 (27)	100.0 (44)	100.0 (41)	100.0 (32)	100.0 (22)	100.0 (17)	100.0 (15)	100.0 (10)	100.0 (5)

[ 그림 3-3-8 ] 대체인력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대 순위

단위 : %



## 7. 대체인력 파견 기간

### 1) 대체인력 단기파견 및 장기파견 최소 신청 일수

대체인력 파견 시 지원하는 최소 신청 일수를 단기파견은 1일 단위, 장기파견은 1개월 단위로 파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우선, 단기파견을 최소 1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질문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4.0%인 반면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46.0%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적절하다가 57.8%, 적절하지 않다가 42.2%인 반면에 아동복지시설은 적절하다가 44.4%, 적절하지 않다가 55.6%로 나타나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기파견을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7.3%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88.9%, 아동복지시설의 83.3%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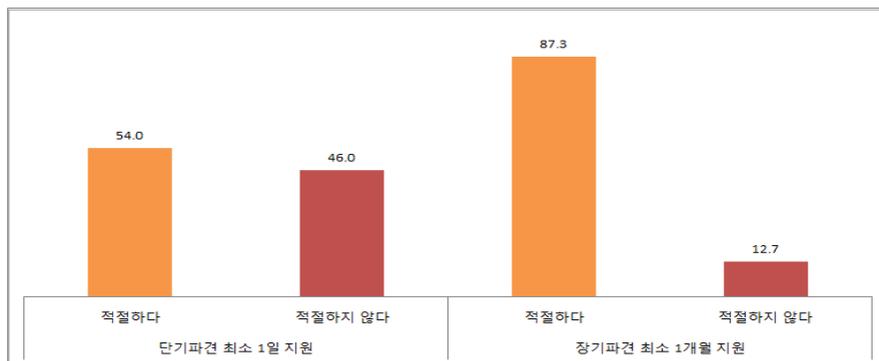
〈 표 3-3-11 〉 대체인력 파견 최소 신청 일수 적절성 여부

단위 : 개수,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단기파견 최소 1일 지원	적절하다	34	54.0	26	57.8	8	44.4
	적절하지 않다	29	46.0	19	42.2	10	55.6
장기파견 최소 1개월 지원	적절하다	55	87.3	40	88.9	15	83.3
	적절하지 않다	8	12.7	5	11.1	3	16.7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3-9 ] 대체인력 파견 최소 신청 일수 적절성 여부

단위 : %



## 2) 대체인력 1회 신청 시 최소 시간

대체인력의 1회 신청 시 최소 시간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일일 4시간 단위, 일일 8시간 단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회 신청 시 최소 시간으로 일일 8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6.1%이고, 일일 4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25.8%, 기타가 8.1%이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일일 8시간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68.9%, 58.8%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일일 4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5.3%로 나타나 장애인복지시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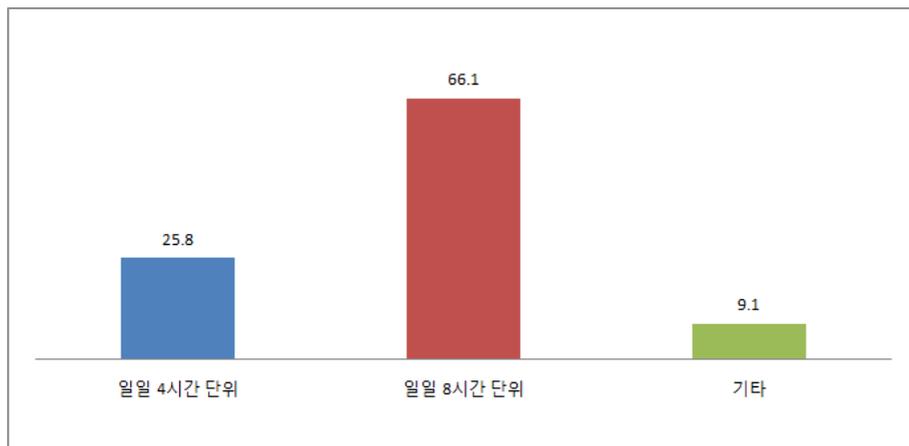
〈 표 3-3-12 〉 대체인력 1회 신청 시 최소 시간으로 적절한 시간 단위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일일 4시간 단위	16	25.8	10	22.2	6	35.3
일일 8시간 단위	41	66.1	31	68.9	10	58.8
기타	5	8.1	4	8.9	1	5.9
계	62	100.0	45	100.0	17	100.0

[ 그림 3-3-10 ] 대체인력 1회 신청 시 최소 시간으로 적절한 시간 단위

단위 : %





### 3)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예상 일수

2016년 10월~12월의 3개월 간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예상 일수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 시설은 총 660일의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기관 당 평균 14.7일이다. 2016년 4/4분기에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총 660일 중 355일은 연가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일수는 총 1,712일이며, 이는 기관 당 평균 33.6일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총 1,712일 중 980일은 연가로 나타났다.

〈 표 3-3-13 〉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예상 일수

단위 : 일

구분	2016년 10월~12월		2017년 전체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660	14.7	1,712	33.6
연가(연차휴가)	355	8.5	980	20.0
특별휴가(본인 결혼)	5	5.0	17	5.7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11	2.8	48	5.3
배우자출산휴가	0	0.0	0	0.0
가족돌봄휴직(또는 근로시간 조정)	55	7.9	174	29.0
교육(연수)	86	3.4	204	6.4
육아휴직	15	15.0	30	3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0	0.0	5	5.0
출산전후휴가	105	52.5	155	51.7
기타	28	9.3	99	49.5

시설유형별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예상 일수를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2016년 10월~12월의 3개월 간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예상 일수는 총 509일이며, 이는 기관 당 평균 15.0일이다. 2016년 4/4분기에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총 509일 중 246일이 연가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은 총 1,413일의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기관 당 평균 36.2일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총 1,413일 중 757일은 연가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2016년 10월~12월의 3개월 간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예상 일수는 총 151일이며, 이는 기관 당 평균 13.7일이다. 2016년 4/4분기에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총 151일 중 109일이 연가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은 총 299일의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기관 당 평균 24.9일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총 299일 중 223일은 연가로 나타났다.

〈 표 3-3-14 〉 시설유형별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예상 일수

단위 : 일

구분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2016년 10~12월		2017년 전체		2016년 10~12월		2017년 전체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509	15.0	1,413	36.2	151	13.7	299	24.9
연가(연차휴가)	246	7.7	757	19.9	109	10.9	223	20.3
특별휴가(본인 결혼)	5	5.0	15	7.5	0	0.0	2	2.0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8	2.7	28	7.0	3	3.0	20	4.0
배우자출산휴가	0	0.0	0	0.0	0	0.0	0	0.0
가족돌봄휴직(또는 근로시간 조정)	43	8.6	162	40.5	12	6.0	12	6.0
교육(연수)	74	3.5	197	6.8	12	3.0	7	2.3
육아휴직	0	0.0	0	0.0	15	15.0	30	3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0	0.0	0	0.0	0	0.0	5	5.0
출산전후휴가	105	52.5	155	51.7	0	0.0	0	0.0
기타	28	9.3	99	49.5	0	0.0	0	0.0

## 8.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

### 1)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

장애인복지시설의 대체인력이 주로 담당하게 될 업무영역은 일상생활지원이 5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돌봄지원과 식사준비 및 보조가 각각 42.9%, 사무활동 35.7%, 외부활동지원 21.4%, 병의원 동행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3-15 〉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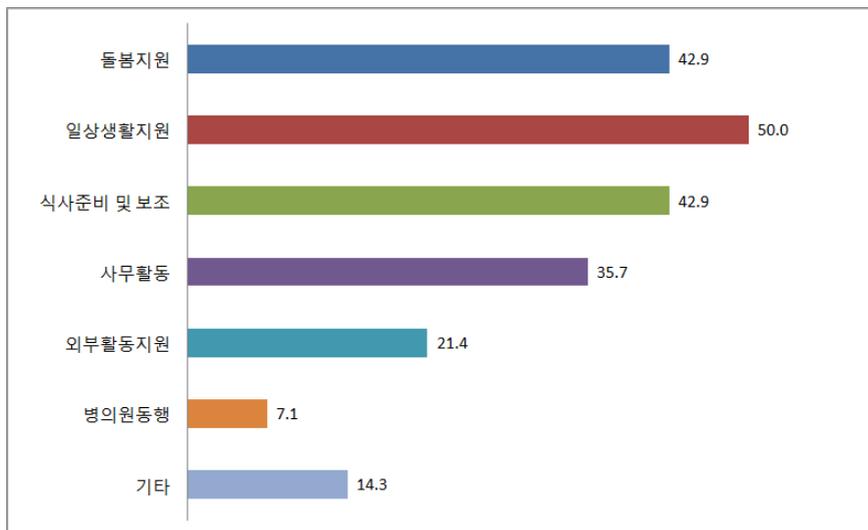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N=14)	백분율
돌봄지원	6	42.9
일상생활지원	7	50.0
식사준비 및 보조	6	42.9
사무활동	5	35.7
외부활동지원	3	21.4
병의원동행	1	7.1
기타	2	14.3

주) 중복응답이므로 백분율의 합이 100%가 아님.

[ 그림 3-3-11 ]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중복응답)

단위 : %



## 2) 아동복지시설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

아동복지시설의 대체인력이 주로 담당하게 될 업무영역은 아동보육이 7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청소 및 장보기 등의 가사업무 53.8%, 식사준비 및 보조, 학습지원, 행정업무가 각각 15.4%, 등하교 준비 및 동행, 외부활동지원, 병원 동행이 각각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3-16 〉 아동복지시설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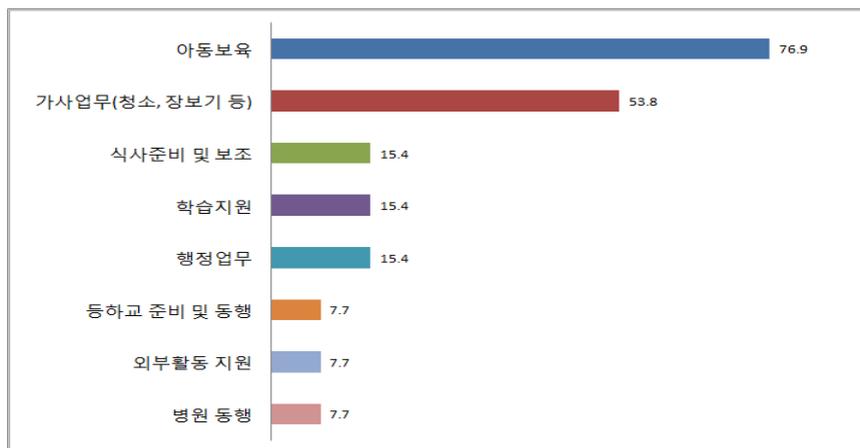
단위 : 개수, %

구분	빈도(N=13)	백분율
아동보육	10	76.9
가사업무(청소, 장보기 등)	7	53.8
식사준비 및 보조	2	15.4
학습지원	2	15.4
행정업무	2	15.4
등하교 준비 및 동행	1	7.7
외부활동 지원	1	7.7
병원 동행	1	7.7

주) 중복응답이므로 백분율의 합이 100%가 아님.

[ 그림 3-3-12 ] 아동복지시설 대체인력의 담당 업무영역(중복응답)

단위 : %



## 제4절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인력에 대한 욕구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인력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업무 특성 상 선호하는 성별, 연령대, 경력, 업무의 수준, 대체인력에게 필요한 자질, 자격 정도, 인건비의 적절성, 교육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 1. 대체인력 선호 성별

시설의 여건이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으로 선호하는 성별을 조사한 결과, 여성 대체인력의 지원(여성인력에게 더 적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3%, 남성 대체인력의 지원(남성인력에게 더 적합)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관계없다는 응답이 각각 19.4%로 나타났다. 즉, 시설의 여건이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종사자의 지원이 더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여성 대체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8%, 남성 대체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6.7%, 관계없다가 15.6%이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여성 대체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6%, 관계없다가 29.4%로 나타났다. 즉,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다는 응답도 높지만, 남성 대체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여성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4-1 〉 대체인력 선호 성별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12	19.4	12	26.7	0	0.0
여성	38	61.3	26	57.8	12	70.6
관계없다	12	19.4	7	15.6	5	29.4
계	62	100.0	45	100.0	17	100.0

## 2. 대체인력 선호 연령대

조사대상 시설의 대체인력 선호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3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30대 30.2%, 관계없다 19.0%, 50대 이상 11.1%, 20대 4.8%의 순이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40대가 3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28.9%, 관계없다 20.0%, 50대 이상 8.9%, 20대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30대와 40대가 각각 33.3%로 가장 많고, 50대 이상과 관계없다가 각각 1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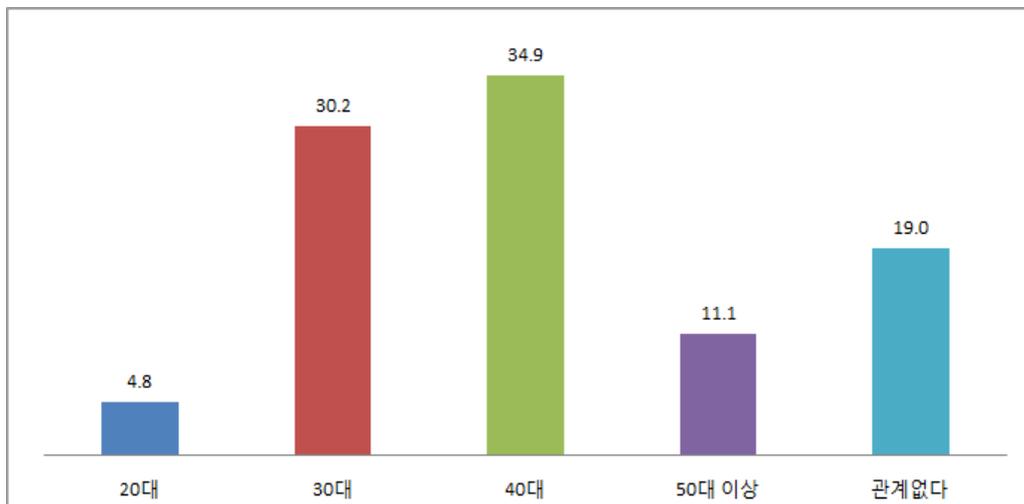
〈 표 3-4-2 〉 대체인력 선호 연령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0대	3	4.8	3	6.7	0	0.0
30대	19	30.2	13	28.9	6	33.3
40대	22	34.9	16	35.6	6	33.3
50대 이상	7	11.1	4	8.9	3	16.7
관계없다	12	19.0	9	20.0	3	16.7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4-1 ] 대체인력 선호 연령대

단위 : %



### 3. 대체인력의 경력 선호 여부

조사대상 시설은 대체인력의 경력과 관련하여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5.6%로 나타났고, 관계없다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2.2%, 관계없다는 응답이 35.6%인데 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8.9%, 관계없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즉, 아동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대체인력의 경력에 대하여 유연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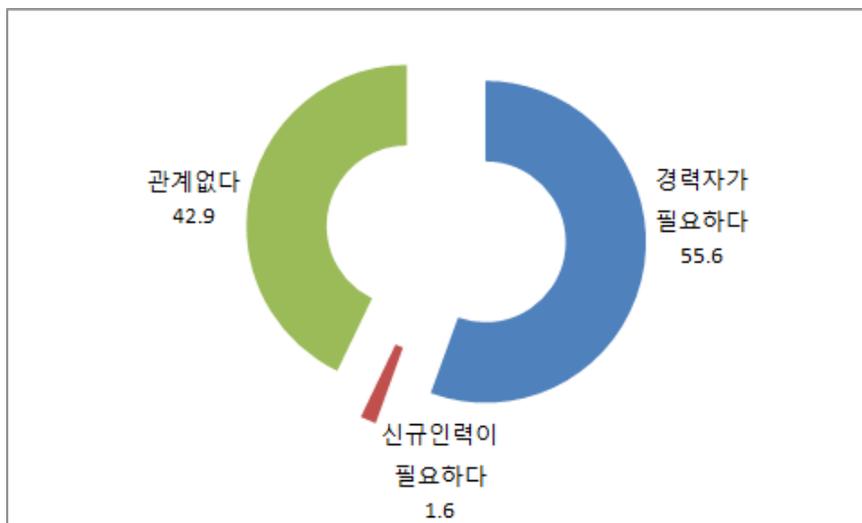
〈 표 3-4-3 〉 대체인력 경력 선호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력자가 필요하다	35	55.6	28	62.2	7	38.9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1	1.6	1	2.2	0	0.0
관계없다	27	42.9	16	35.6	11	61.1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4-2 ] 대체인력 경력 선호 여부

단위 : %



#### 4. 대체인력에게 맡겨질 업무의 수준

대체인력에게 맡겨질 업무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결과, 휴가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이 4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 36.5%, 휴가자가 했던 업무와 동일한 수준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시설의 3/4정도는 휴가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거나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으로 업무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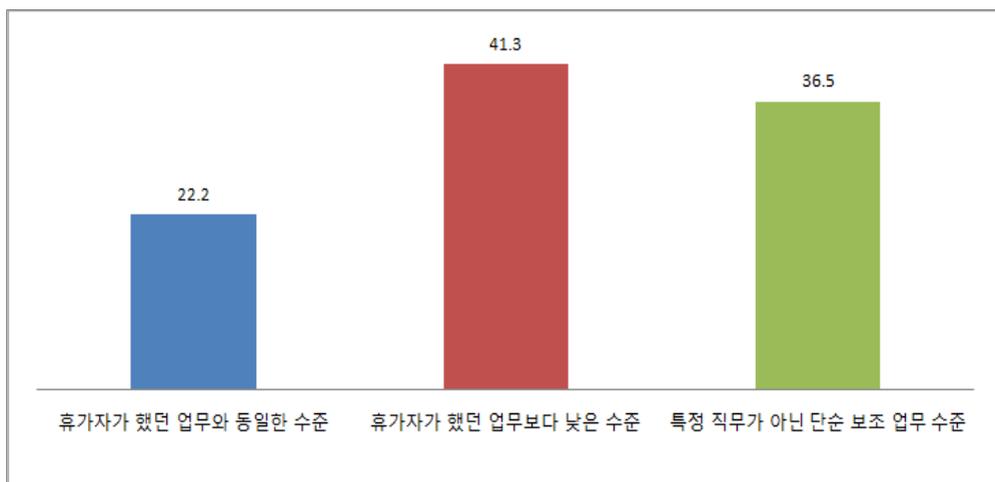
〈 표 3-4-4 〉 대체인력에게 맡겨질 업무의 수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휴가자가 했던 업무와 동일한 수준	14	22.2	10	22.2	4	22.2
휴가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	26	41.3	19	42.2	7	38.9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	23	36.5	16	35.6	7	38.9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4-3 ] 대체인력에게 맡겨질 업무의 수준

단위 : %





## 5. 대체인력의 자질

대체인력이 지녀야 할 자질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로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3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성실한 근무태도 23.8%, 이용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15.9%, 업무수행능력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순위로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3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이용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20.0%, 성실한 근무태도 15.6%, 업무수행능력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성실한 근무태도가 4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 3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관계형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 표 3-4-5 〉 대체인력 자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위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시설 종사자와의 원만한 관계형성	3.2	6.3	<b>14.3</b>	4.4	4.4	13.3	0.0	<b>11.1</b>	<b>16.7</b>
성실한 근무태도	<b>23.8</b>	<b>17.5</b>	<b>23.8</b>	<b>15.6</b>	<b>22.2</b>	<b>24.4</b>	<b>44.4</b>	5.6	<b>22.2</b>
이용자에 대한 이해	<b>36.5</b>	<b>12.7</b>	4.8	<b>37.8</b>	11.1	6.7	<b>33.3</b>	<b>16.7</b>	0.0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1.6	<b>14.3</b>	<b>15.9</b>	0.0	13.3	<b>17.8</b>	<b>5.6</b>	<b>16.7</b>	11.1
업무수행능력	7.9	7.9	9.5	8.9	8.9	6.7	<b>5.6</b>	5.6	<b>16.7</b>
업무에 대한 책임감	4.8	<b>17.5</b>	12.7	6.7	<b>20.0</b>	<b>15.6</b>	0.0	<b>11.1</b>	5.6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3.2	0.0	0.0	2.2	0.0	0.0	<b>5.6</b>	0.0	0.0
관련 실무 경험	3.2	6.3	3.2	4.4	4.4	4.4	0.0	<b>11.1</b>	0.0
이용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b>15.9</b>	<b>17.5</b>	<b>15.9</b>	<b>20.0</b>	<b>15.6</b>	11.1	<b>5.6</b>	<b>22.2</b>	<b>27.8</b>
계 (개소)	100.0 (63)	100.0 (63)	100.0 (63)	100.0 (45)	100.0 (45)	100.0 (45)	100.0 (18)	100.0 (18)	100.0 (18)

## 6. 대체인력 선호 자격 정도

사회복지 관련 자격을 기준으로 대체인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이외 관련 자격 또는 교육수료자(근무경력자)가 46.0%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보유자(근무경력자) 23.8%,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결격사유가 없는 고졸 이상 학력자 14.3%, 사회복지사 이외 관련 자격 또는 교육수료자(무경력자)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는 시설유형별로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이외 관련 자격 또는 교육수료자(근무경력자)가 5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보유자(근무경력자)가 22.2%인 반면에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보유자(근무경력자)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결격사유가 없는 고졸 이상 학력자가 각각 27.8%, 사회복지사 이외 관련 자격 또는 교육수료자(근무경력자)와 자격기준 필요 없음이 각각 16.7%로 나타났다. 즉, 아동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대체인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유연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3-4-6 〉 대체인력 선호 자격 정도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보유자(근무경력자)	15	23.8	10	22.2	5	27.8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보유자(무경력자)	2	3.2	1	2.2	1	5.6
사회복지사 이외 관련 자격 또는 교육수료자(근무경력자)	29	46.0	26	57.8	3	16.7
사회복지사 이외 관련 자격 또는 교육수료자(무경력자)	5	7.9	4	8.9	1	5.6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결격사유가 없는 고졸 이상 학력자	9	14.3	4	8.9	5	27.8
자격기준 필요 없음	3	4.8	0	0.0	3	16.7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7. 대체인력 인건비 적절성

### 1)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대체인력의 인건비 수준을 1일 8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조사한 결과, 적당하다가 74.6%, 많은 편이다가 15.9%, 적은 편이다가 9.5%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적당하다가 64.4%, 많은 편이다가 22.2%, 적은 편이다가 13.3%로 나타난 반면에 아동복지시설은 모든 응답자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1일 8만원의 인건비 수준은 적당한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수준을 많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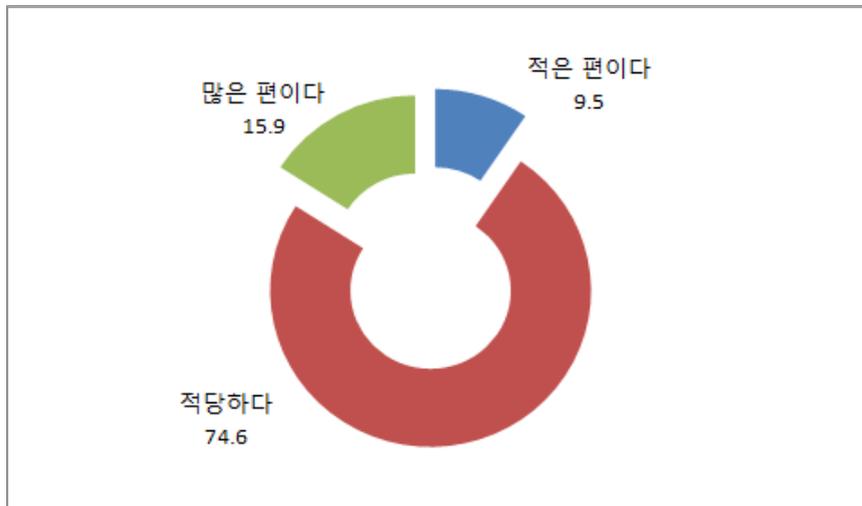
〈 표 3-4-7 〉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단위 : 개수,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은 편이다	6	9.5	6	13.3	0	0.0
적당하다	47	74.6	29	64.4	18	100.0
많은 편이다	10	15.9	10	22.2	0	0.0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4-4 ]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단위 : %



## 2) 대체인력 주말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대체인력의 주말(휴일) 인건비로 1일 8만원의 수준이 적당한지 조사한 결과, 적당하다와 적은 편이다가 각각 46.0%, 많은 편이다가 7.9%로 나타났다. 즉, 평일 1일 8만원의 인건비 수준은 적당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주말 인건비로는 적은 편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적은 편이다 46.7%, 적당하다 44.4%, 많은 편이다 8.9%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적당하다 50.0%, 적은 편이다 44.4%, 많은 편이다 5.6%로 나타났다. 즉,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평일 인건비와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주말 근로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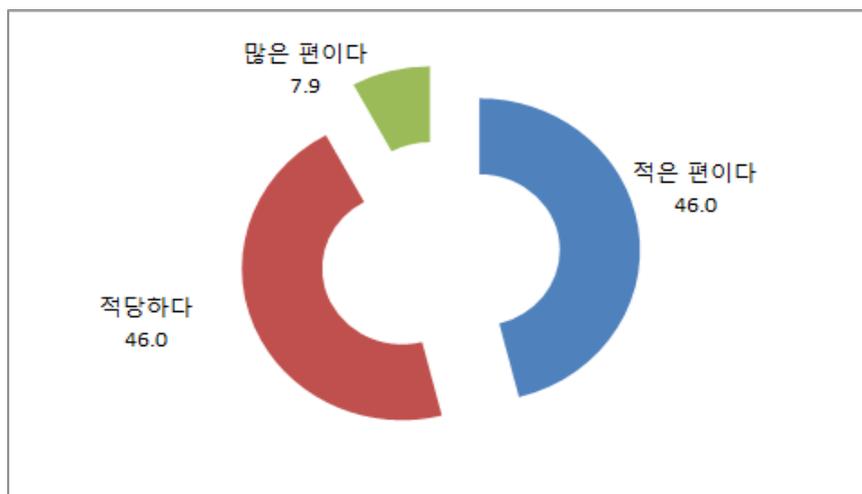
〈 표 3-4-8 〉 대체인력 주말(휴일)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은 편이다	29	46.0	21	46.7	8	44.4
적당하다	29	46.0	20	44.4	9	50.0
많은 편이다	5	7.9	4	8.9	1	5.6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4-5 ] 대체인력 주말(휴일)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단위 : %





대체인력의 주말 인건비로 1일 8만원의 인건비가 적다고 응답한 시설을 대상으로 주말 인건비의 합리적 수준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일 8만원의 150% 수준인 일일 120,000원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1일 8만원 기준의 120%인 일일 96,000원이 3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일 8만원 기준의 150%인 일일 120,000원이 38.1%, 1일 8만원 기준의 120%인 일일 96,000원이 2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일 8만원 기준 120%인 일일 96,000원과 150% 수준인 일일 120,000원이 각각 3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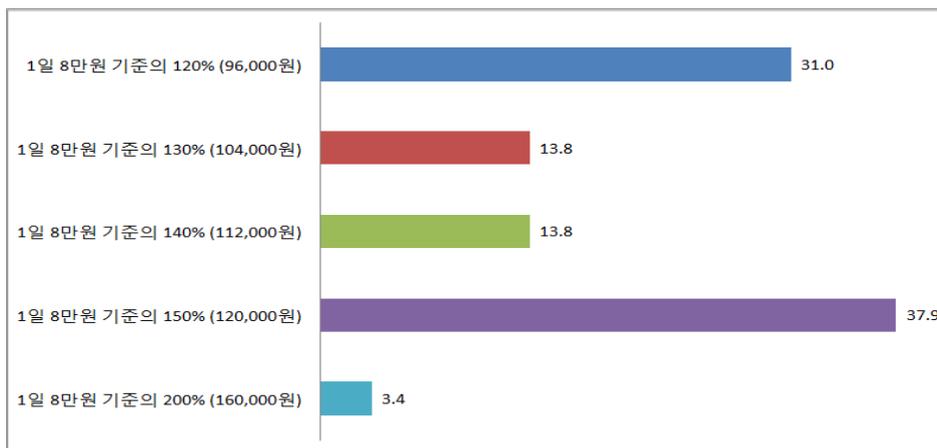
< 표 3-4-9 > 대체인력 주말(휴일) 인건비 추가 지급 시 합리적 수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일 8만원 기준의 120% (96,000원)	9	31.0	6	28.6	3	37.5
1일 8만원 기준의 130% (104,000원)	4	13.8	4	19.0	0	0.0
1일 8만원 기준의 140% (112,000원)	4	13.8	2	9.5	2	25.0
1일 8만원 기준의 150% (120,000원)	11	37.9	8	38.1	3	37.5
1일 8만원 기준의 200% (160,000원)	1	3.4	1	4.8	0	0.0
계	29	100.0	21	100.0	8	100.0

[ 그림 3-4-6 ] 대체인력 주말(휴일) 인건비 추가 지급 시 합리적 수준

단위 : %



### 3) 대체인력 야간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대체인력의 야간(저녁~아침) 인건비로 1일 8만원의 수준이 적당한지 질문한 결과, 적은 편이다가 4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적당하다 44.4%, 많은 편이다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적당하다가 48.9%로 가장 많고, 적은 편이다 40.0%, 많은 편이다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적은 편이다가 66.7%로 가장 많고, 적당하다 33.3%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의 실제 야간 근로 시 업무량이나 업무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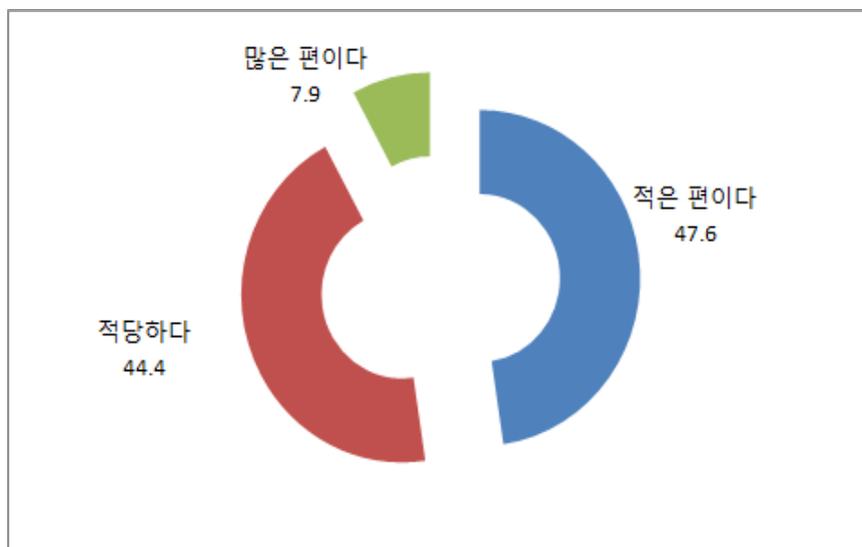
〈 표 3-4-10 〉 대체인력 야간(저녁~아침)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적은 편이다	30	47.6	18	40.0	12	66.7
적당하다	28	44.4	22	48.9	6	33.3
많은 편이다	5	7.9	5	11.1	0	0.0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4-7 ] 대체인력 야간(저녁~아침) 인건비 1일 8만원의 적절성 여부

단위 : %



대체인력의 야간 인건비로 1일 8만원의 수준이 적다고 응답한 시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인건비 수준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일 8만원 기준의 120%인 일일 96,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1일 8만원 기준의 150%인 일일 120,000원이 2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일 8만원 기준의 120%인 일일 96,000원이 3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일 8만원 기준의 150%인 일일 120,000원이 2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일 8만원 기준의 120%인 일일 96,000원과 1일 8만원 기준의 130%인 일일 104,000원이 각각 33.3%, 1일 8만원 기준의 150%인 일일 120,000원 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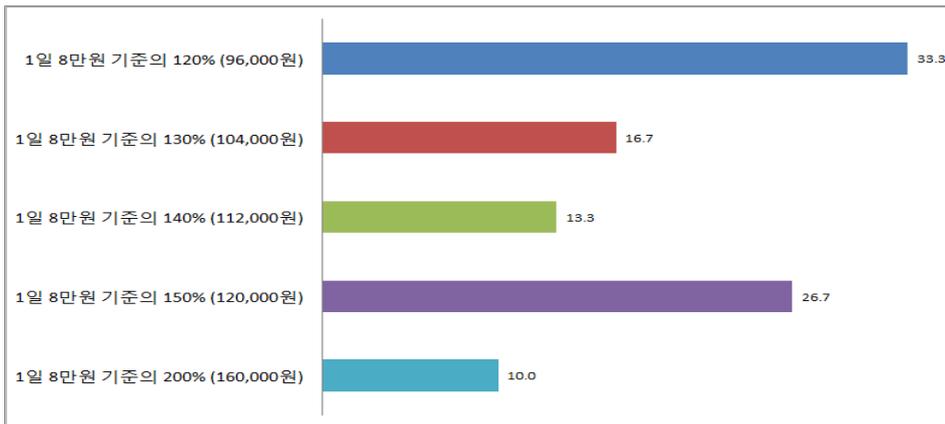
〈 표 3-4-11 〉 대체인력 야간(저녁~아침) 인건비 추가 지급 시 합리적 수준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일 8만원 기준의 120% (96,000원)	10	33.3	6	33.3	4	33.3
1일 8만원 기준의 130% (104,000원)	5	16.7	1	5.6	4	33.3
1일 8만원 기준의 140% (112,000원)	4	13.3	3	16.7	1	8.3
1일 8만원 기준의 150% (120,000원)	8	26.7	5	27.8	3	25.0
1일 8만원 기준의 200% (160,000원)	3	10.0	3	16.7	0	0.0
계	30	100.0	18	100.0	12	100.0

[ 그림 3-4-8 ] 대체인력 야간(저녁~아침) 인건비 추가 지급 시 합리적 수준

단위 : %



## 8. 대체인력 사전교육

### 1) 대체인력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대체인력을 시설에 파견하기 전 필요한 교육내용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육이 9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용자 인권 및 학대 예방 81.0%, 재난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66.7%, 시설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65.1%, 이용자 관련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이해 63.5%, 성폭력 예방 교육 54.0%,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이해 52.4%, 기본 돌봄 기술 44.4%, 현장실습 42.9%,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문서작성 등) 이해 2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해 95.6%, 이용자 인권 및 학대 예방 86.7%, 재난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73.3%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해 94.4%, 이용자 관련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이해 72.2%, 이용자 인권 및 학대 예방과 기본 돌봄 기술이 각각 66.7%로 나타났다.

〈 표 3-4-12 〉 대체인력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중복응답)

단위: 건, %

구분	전체 (N=63)		장애인복지시설 (N=45)		아동복지시설 (N=1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용자 관련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이해	40	63.5	27	60.0	13	72.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해	60	95.2	43	95.6	17	94.4
성폭력 예방 교육	34	54.0	28	62.2	6	33.3
재난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42	66.7	33	73.3	9	50.0
현장실습	27	42.9	22	48.9	5	27.8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문서작성 등) 이해	18	28.6	14	31.1	4	22.2
시설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41	65.1	31	68.9	10	55.6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이해	33	52.4	25	55.6	8	44.4
이용자 인권 및 학대 예방	51	81.0	39	86.7	12	66.7
기본 돌봄 기술	28	44.4	16	35.6	12	66.7

주) 중복응답이므로 백분율의 합이 100%가 아님.

## 2) 대체인력의 적절한 교육 이수 시간대

대체인력의 사전교육 시간으로 적당한 시간은 8시간이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6시간 28.6%, 4시간 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 44.4%, 16시간 35.6%의 순으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 55.6%, 4시간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 시간에 대하여 유연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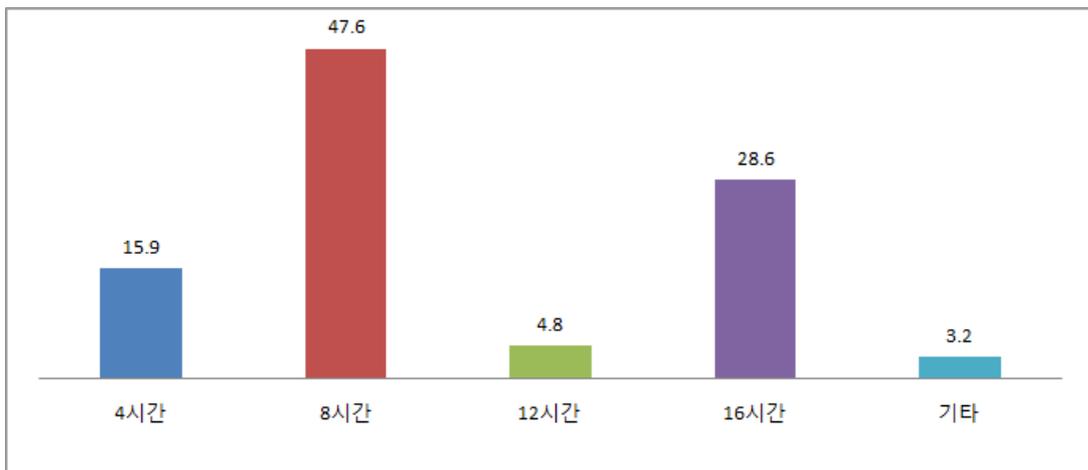
〈 표 3-4-13 〉 대체인력의 적절한 교육 이수 시간대

단위 : 개수, %

구분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4시간	10	15.9	6	13.3	4	22.2
8시간	30	47.6	20	44.4	10	55.6
12시간	3	4.8	2	4.4	1	5.6
16시간	18	28.6	16	35.6	2	11.1
기타	2	3.2	1	2.2	1	5.6
계	63	100.0	45	100.0	18	100.0

[ 그림 3-4-9 ] 대체인력의 적절한 교육 이수 시간대

단위 : %



## 제4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주요 결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조사대상 시설의 특성과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욕구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 시설의 특성

조사대상 시설의 특성을 정리하면 우선, 일반적 특성은 시설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이 45개소, 아동복지시설이 18개소로 총 63개소이다. 시설은 주로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조사대상 시설 63개소 중 1/3정도는 동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시설의 운영주체는 10곳 중 7곳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며, 시설의 근로형태는 전일제, 전일제와 교대제의 혼합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 시설의 종사자 현황은 조사대상 종사자 167명 중 여성종사자가 2/3정도이며, 연령대는 10명 중 6명 정도는 40~50대이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이 가장 많고, 10명 중 9명 정도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경력은 1년 미만이 10명 중 3명 정도이며, 절반 정도가 3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상근이 대부분이지만 비상근의 종사자가 상당수 존재하며, 출근유형은 10명 중 3명 정도는 시설에 상주하거나 필요시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지급은 보조급(유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의 주된 근로시간은 주중(월~금) 근로와 매일(상주) 근로가 대부분이고, 시간으로는 주간근무 중심과 주간과 야간을 비슷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설 종사자의 연차 유급휴가 가능 일수 대비 사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 시설의 이용자 현황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264명, 아동복지시설은 107명으로 총 371명이다. 조사대상 이용자 중 남성이 2/3정도이고, 연령대는 장애인복지시설은 20대



가 1/3정도, 아동복지시설은 15~19세가 가장 많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대부분이고, 장애등급은 1~3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10명 중 1명 정도는 장애가 있으며, 대부분 지적장애이다. 이용자의 입주기간은 10명 중 4명 정도는 2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낮 시간 외부활동은 아동복지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교육기관 등 외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절반 정도만 외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10명 중 3명 정도는 주말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욕구

조사대상 시설의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욕구를 정리하면 우선, 대체인력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시설 63개소 중 대체인력 채용경험이 있는 시설은 12개소이며, 기관당 평균 3.75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채용 시 어려움은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부담이 가장 많으며, 대체인력에게 맡긴 업무의 수준은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이며,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인건비 마련 방법은 자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공백 현황은 시설별 전체 종사자가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2015년의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평균 36.5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평균 25.5일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했던 일수는 평균 43.6일, 실제 사용한 일수는 평균 24.2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시설 10개소 중 9개소는 결혼, 임신, 출산 등 장기 업무공백과 연가, 특별휴가, 교육 등에 따른 단기 업무공백에 대체인력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업무공백과 단기 업무공백 중에는 단기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은 연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한 시간대로는 주중 주간, 주중 야간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주간근로는 7~9시간 사이, 야간근로는 11~13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파견 기간은 일일 8시간 단위로 단기파견은 최소 1일, 장기파견은 최소 1개월이 적절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이 주로 담당하게 될 업무영역은 장애인복지시설은 일상생활지원, 돌봄지원, 식사준비 및 보조의 순으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보육, 청소 및 장비기 등의 가사 업무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인력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대체인력으로 선호하는 성별은 여성이 많고, 주로 30~40대를 선호하며, 관련 경력이 필요하지만 관계없다는 응답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에게 맡겨질 업무의 수준은 휴가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의 자질로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성실한 근무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대체인력의 자격수준 정도는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근무경력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에 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의 인건비로는 1일 8만원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으로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해, 이용자 인권 및 학대 예방 등의 교육이 필요하며, 8시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제2절 제언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의 사업대상이 되는 종사자 5인 이하 생활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른 장기적인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과 연가, 병가, 특별휴가, 교육 등 단기적인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의 필요성은 각각 10개 시설 중 9개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를 기준으로 1인 시설인 곳이 28개소에 달한다(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 통계현황, 내부자료). 물론 이번 조사에서 자부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1인이 종사하는 시설은 11개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시설의 종사자 수는 시설 당 평균 2.65명으로 3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본적으로 종사자 수의 규모가 작다보니 종사자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연가, 교육 등의 기회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업무공백을 보완하는 사업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대체인력 채용경험이 1/5정도에 불과하다. 대체인력 채용경험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 대체인력 고용의 어려움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부담과 대체인력 자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대체인력풀(pool)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인력 수급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은 단기 업무공백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장기 업무공백이든 단기 업무공백이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기와 단기의 업무공백 중에는 단기 업무공백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 업무공백의 경우 관련 제도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단기 업무공백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서비스가 없는 실정이다. 연가,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의 단기 업무공백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에서도 연가, 병가,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 업무공백에 우선순위를 두어 대체인력을 지원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기 업무공백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인력풀(pool)을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욕구에 맞추어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체인력지원 시간은 기본적인 지침에 근거하되, 사회복지시설의 욕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시간대별 대체인력의 필요성은 주중 주간과 야간, 주말 주간과 야간에 관계없이 10개 시설 중 6개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모든 시간대에서 대체인력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대는 주중 주간, 주중 야간, 주말 주간, 주말 야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대는 주중에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한 총 근무시간은 주중 주간과 주말 주간 등 주간 근무시간은 7~9시간 사이로 나타났고, 주중 야간과 주말 야간 등 야간 근무시간은 11~13시간 사이로 나타났다. 물론 조사대상 시설의 2/3정도는 1일 8시간 단위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각 시설의 욕구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1일 8시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 지침이라 하더라도 각 시설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나 시간 등의 제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1일(또는 1회) 사용시간을 1~2시간 정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체인력의 경력, 능력 등 역량에 맞춘 인력풀(pool) 관리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대체인력에 대한 관련 경력 선호에서 절반 정도는 관련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체인력의 선호 자격수준 정도는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의 관련 자격을 보유한 근무경력자라는 응답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동복지시설에 비하여 관련 경력 및 자격에 대하여 요구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생활인)를 대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시설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에서 실제 대체인력에게 맡겼던 업무의 수준은 휴가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이 3/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체인력 활용 시 업무 대체 가능 정도도 업무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고, 향후 대체인력에게 맡겨지는 업무의 수준도 4/5정도는 휴가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특정 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의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대체인력의 역량 수준에 맞추어

인력풀(pool)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인력 지원자의 자격기준은 최소화하여 다양한 인력 풀(pool)을 구성한 후, 개별 시설의 욕구에 맞추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격기준이 낮은 대체인력은 현장실습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대체인력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욕구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체인력이 지원될 경우 실제로 담당하게 될 업무로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지원, 돌봄지원, 식사준비 및 보조 등으로 나타났고,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아동보육, 청소 및 장보기 등의 가사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의 자질로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 성실한 근무태도, 이용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으로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해, 이용자 인권 및 학대 예방, 재난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이용자 관련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이해 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대체인력에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대체인력 교육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으로 일일(8시간 기준) 8만원의 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인력의 임금수준으로 일일(8시간 기준) 8만원의 임금은 조사대상 시설의 3/4정도는 적당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주말근로와 야간근로의 임금수준으로 적절한지를 질문한 결과, 적당하다는 응답과 많은 편이다라는 응답의 합이 절반 정도를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일일 8만원의 임금 수준은 주간, 주말, 야간 근로에 따른 임금수준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취침을 해야 하므로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시설에서 인식하는 야간 근로의 적정 임금 수준은 96,000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준하는 수준에서 추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참고 문헌

- 김영옥·김종숙·이선행(2015).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5년),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 김진우·백은령·윤덕찬·장기성(2014).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덕성여대 아시아사회복지연구소.
- 남세현·변경희·김동기·이미정·김용혁·윤덕찬(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대전광역시(2016).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 통계현황(2016. 7. 1.),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 문미경·권소영·금창호(2015).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건·국미애·안유진(2015). 서울시 여성 대체인력 심층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보건복지부(2016).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1, II).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2015).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안내(권고안).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 II).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III권).



## ○ 부록 : 조사표

자료입력ID(※기입X)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대전복지재단, 2014)’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기초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가정 양립 대체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대전복지효재단에 의뢰하여 복지사업팀에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정책연구팀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을 위한 기초자료와 향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 시설의 소중한 응답은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 문의 및 연락처 > 대전복지효재단 정책연구팀 331-8932, 8982

■ 연구수행기관 : 대전복지효재단

■ 연구지원기관 :  대전광역시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김기수(대전복지효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이동열(대전복지효재단 정책연구팀 위촉연구원)



**B. 종사자(근로자) 현황**

※ 귀 시설에 근로하는 종사자(보조금지원 근로자, 자부담 채용 근로자,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으로 지원받는 근로자 포함)의 현황을 조사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대표자	종사자1	종사자2	종사자3	종사자4	종사자5	종사자6
1. 성별	① 남                      ② 여							
2. 배우자 유무	① 배우자 있음            ② 배우자 없음							
3.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4. 교육수준	① 고졸이하                ② 2년제 대학 ③ 4년제 대학            ④ 대학원 이상							
5. 전공분야	직접기입 (예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학, 행정학 등)							
6. 근무형태	① 상근(기간제 근로자 포함) ② 비상근(겸직 포함)							
7. 출근유형	① 출퇴근                  ② 시설 상주                  ③ 필요시 출근							
8. 급여지급	① 유급(보조금지급)        ② 유급(자체부담) ③ 유급(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④ 무급							
9. 현 기관 근무경력(예 : 2년 6개월)		__년 __개월	__년 __개월	__년 __개월	__년 __개월	__년 __개월	__년 __개월	__년 __개월
연차유급휴가 (연가)	10.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 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11. 연차 실제 사용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주된 근로 시간	12. 요일	① 주중(월~금)              ② 주말(토~일) ③ 매일(상주)              ④ 기타(직접기입)						
	13. 시간	① 주간근무 중심            ② 야간근무 중심 ③ 주간·야간을 비슷하게 근무						



**C. 장애인 이용자(생활인) 현황**

※ 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의 현황을 조사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주인원	총 _____명	※ 2~10번 문항 각각의 합산이 거주인원 수와 일치하도록 작성 예) 거주인원이 총 10명이면, 남자 4명 + 여자 6명 = 10명
2. 성별	① 남자 _____명	② 여자 _____명
3. 연령	① 0-9세 _____명    ② 10-19세 _____명    ③ 20-29세 _____명    ④ 30-39세 _____명 ⑤ 40-49세 _____명    ⑥ 50-59세 _____명    ⑦ 60세 이상 _____명	
4. 주 장애유형	① 지체장애 _____명                      ② 뇌병변장애 _____명                      ③ 시각장애 _____명 ④ 청각장애 _____명                      ⑤ 언어장애 _____명                      ⑥ 지적장애 _____명 ⑦ 정신장애 _____명                      ⑧ 자폐성장애 _____명                      ⑨ 안면장애 _____명 ⑩ 내부장애 _____명 (*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장애임)	
5. 장애등급	① 1급 _____명                      ② 2급 _____명                      ③ 3급 _____명 ④ 4급 _____명                      ⑤ 5급 _____명                      ⑥ 6급 _____명	
6. 입주기간 (최초 이용일 기준)	① 2년 미만 _____명                      ② 2년 이상 4년 미만 _____명                      ③ 4년 이상 6년 미만 _____명 ④ 6년 이상 8년 미만 _____명                      ⑤ 8년 이상 10년 미만 _____명                      ⑥ 10년 이상 _____명	
7.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여부	① 참여 _____명	② 미참여(시설 내 머물) _____명
8.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분야	① 일반직장 _____명                      ② 직업재활시설 _____명 ③ 주간보호프로그램 _____명                      ④ 학교 _____명 ⑤ 기타(                      ) _____명	
9. 주말 시설 이용 여부	① 이용(시설 내 머물) _____명	② 미이용 _____명
10. 보호자 유무	① 보호자 있음 _____명	② 보호자 없음 _____명

### C. 아동 이용자(생활인) 현황

※ 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의 현황을 조사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주인원	총 _____명	※ 2~8번 문항 각각의 합산이 거주인원 수와 일치하도록 작성 예) 거주인원이 총 10명이면, 남자 4명 + 여자 6명 = 10명
2. 성별	① 남자 _____명	② 여자 _____명
3. 연령	① 0-4세 _____명    ② 5-9세 _____명    ③ 10-14세 _____명    ④ 15-19세 _____명 ⑤ 20-29세 _____명    ⑥ 기타 _____명 (            세)	
4. 장애로 등록된 아동이 있습니까?	_____명 ☞ 장애아동이 없을시 5번 문항으로	
4-1. 장애로 등록된 아동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직접기입)	
5. 등록된 장애 이외의 미등록 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아동이 있습니까?	_____명 ☞ 장애아동이 없을시 6번 문항으로	
5-1. 주로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접기입)	
6. 입주기간 (최초 이용일 기준)	① 2년 미만 _____명            ② 2년 이상 4년 미만 _____명    ③ 4년 이상 6년 미만 _____명 ④ 6년 이상 8년 미만 _____명    ⑤ 8년 이상 10년 미만 _____명    ⑥ 10년 이상 _____명	
7.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여부	① 참여 _____명	② 미참여(시설 내 머물) _____명
8. 낮 시간 외부활동 참여분야	① 어린이집 및 유치원 _____명            ② 초등학교 _____명 ③ 중학교 _____명                            ④ 고등학교 _____명 ⑤ 대학교 _____명                            ⑥ 기    타 _____명 (            )	



**D. 대체인력활용 현황**

1. 귀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 육아, 병가, 특별휴가, 연가, 가족돌봄휴직, 교육연수, 기타 등을 포함한 업무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기 목적으로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경우도 포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채용 경험	___① 있다 ___② 없다	___① 있다 ___② 없다	___① 있다 ___② 없다
채용 인원	___명	___명	___명

☞ 채용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다음 페이지로

2. 귀 시설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의 가장 큰 어려움을 하얀 칸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_\_\_ 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가 부담스럽다
- \_\_\_ ②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 \_\_\_ ③ 해당 기간만 일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 \_\_\_ ④ 대체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낮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 \_\_\_ ⑤ 기타( )

3. 귀 시설이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때 대체인력에게 맡긴 업무의 난이도는 어떠하였습니까?

- \_\_\_ ① 휴가자(휴직자)가 했던 업무와 동일수준의 업무를 대체인력이 수행하였다
- \_\_\_ ② 휴가자(휴직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를 대체인력이 수행하였다
- \_\_\_ ③ 특정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를 대체인력이 수행하였다

4. 귀 시설은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까?

- \_\_\_ ① 업무 부담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였다
- \_\_\_ ② 업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 \_\_\_ ③ 그저 그렇다
- \_\_\_ ④ 업무 부담을 해소하였다
- \_\_\_ ⑤ 업무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였다

5. 귀 시설에서 대체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마련한 방법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_\_\_ ① 보조금
- \_\_\_ ② 자부담
- \_\_\_ ③ 지원금 또는 장려금(고용노동부 등)
- \_\_\_ ④ 기타( )

## E. 업무공백 현황

1. 귀 시설의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일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일수가 없으면 0일로 기입

\*사용가능일수 : 귀 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기입,

예) 연가의 경우 종사자a=15일, 종사자b=10일이면 사용가능 일수는 25일(15일+10일)로 기입

\*사용일수 : 귀 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개인별로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기입

예) 연가의 경우 종사자a는 8일 사용, 종사자b는 4일 사용했으면 12일(8일+4일)로 기입

구분	2015년 (1.1.~12.31.)		2016년 (1.1.~8.31.)		2016년(예상일수) (9.1.~12.31.)
	사용가능 일수	사용 일수	사용가능 일수	사용 일수	사용(예상) 일수
연가(연차휴가)	일	일	일	일	일
특별휴가(본인 결혼)	일	일	일	일	일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일	일	일	일	일
배우자출산휴가	일	일	일	일	일
가족 돌봄 휴직(또는 근로시간 조정 등)	일	일	일	일	일
병가	일	일	일	일	일
교육(연수)	일	일	일	일	일
육아휴직	일	일	일	일	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일	일	일	일	일
출산전후휴가	일	일	일	일	일
기타( )	일	일	일	일	일

2. 종사자 부재 시 이용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이용자들끼리 생활하고 있다<br><input type="checkbox"/> ③ 가까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같이 지원한다<br><input type="checkbox"/> ⑤ 무급 자원봉사자가 있다<br><input type="checkbox"/> ⑦ 시설장(종사자)의 가족이 지원한다<br><input type="checkbox"/> ⑨ 이용자의 가족이 지원한다<br><input type="checkbox"/> ⑪ 원가정으로 보낸다 | <input type="checkbox"/> ② 유급대체인력이 지원한다<br><input type="checkbox"/> ④ 가까운 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한다<br><input type="checkbox"/> ⑥ 유급 자원봉사자가 있다<br><input type="checkbox"/> ⑧ 시설장(종사자)의 지인이 지원한다<br><input type="checkbox"/> ⑩ 이용자를 시설장(종사자)의 집으로 데려간다<br><input type="checkbox"/> ⑫ 기타( ) |
|---------------------------------------------------------------------------------------------------------------------------------------------------------------------------------------------------------------------------------------------------------------------------------|-----------------------------------------------------------------------------------------------------------------------------------------------------------------------------------------------------------------------------------------------------------------------------------|



**F.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1. 귀 시설은 종사자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퇴사한 종사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귀 시설의 여건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3. 귀 시설의 여건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외의 병가, 연가(연차휴가), 특별휴가(경조사), 교육(연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4. 귀 시설의 여건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업무공백 중 대체인력지원이 더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단기적인 업무공백(연가, 병가, 경조사, 배우자출산휴가, 교육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② 장기적인 업무공백(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5. 대체인력을 활용하게 된다면 귀 시설의 업무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업무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② 대부분의 업무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③ 업무의 절반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다                       ④ 대부분의 업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  
 ⑤ 모든 업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
  
6. 귀 시설의 여건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가(연차휴가)                       ② 특별휴가(본인 결혼)  
 ③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④ 배우자출산휴가  
 ⑤ 가족 돌봄 휴직(또는 근로시간 조정 등)                       ⑥ 병가  
 ⑦ 교육(연수)                       ⑧ 육아휴직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⑩ 출산전후휴가  
 ⑪ 기타(                      )

6-1. 위의 응답 중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0. 귀 시설의 여건이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장기파견 형태의 대체인력을 최소 30일(1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
- ② 적절하지 않다 ☞ 10-1 문항으로

10-1. 적절하지 않다면, 최소 신청단위 일수는 며칠이 적절합니까? \_\_\_\_\_ 일

11.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따라 대체인력을 지원(대체인력의 인건비를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한다면 실제로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_\_\_ ① 예 ☞ 11-1 문항으로
- \_\_\_ ② 아니오 ☞ 11-3 문항으로

11-1. 아래 문항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한 예상 일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일수가 없으면 0일로 기입

활용 내용	2016년			2017년	
	10월	11월	12월	상반기	하반기
연가(연차휴가)	일	일	일	일	일
특별휴가(본인 결혼)	일	일	일	일	일
특별휴가(본인 결혼 이외의 경조사)	일	일	일	일	일
배우자출산휴가	일	일	일	일	일
가족돌봄휴직(또는 근로시간조정)	일	일	일	일	일
교육(연수)	일	일	일	일	일
육아휴직	일	일	일	일	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	일	일	일	일
출산전후휴가	일	일	일	일	일
기타( )	일	일	일	일	일

11-2. 귀 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면, 주로 수행할 업무는 무엇입니까?

11-3. 귀 시설에서 대체인력 지원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인력에 대한 욕구

\*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인력에 대한 욕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욕구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귀 시설의 여건이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으로 선호하는 성별이 있습니까?

- \_\_\_ ① 남성 대체인력의 지원(남성인력에게 더 적합)이 필요하다  
 \_\_\_ ② 여성 대체인력의 지원(여성인력에게 더 적합)이 필요하다  
 \_\_\_ ③ 관계없다

2. 귀 시설의 여건이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으로 선호하는 연령대가 있습니까?

- \_\_\_ ① 20대      \_\_\_ ② 30대      \_\_\_ ③ 40대      \_\_\_ ④ 50대 이상      \_\_\_ ⑤ 관계없다

3. 귀 시설의 여건이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으로 관련 경력자가 필요하십니까?

- \_\_\_ ① 경력자가 필요하다      \_\_\_ ②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_\_\_ ③ 관계없다

4. 귀 시설의 여건이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에게 맡겨지는 업무의 수준은 어떤 것이 적절합니까?

- \_\_\_ ① 휴가자(휴직자)가 했던 업무와 동일수준의 업무를 대체인력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_\_\_ ② 휴가자(휴직자)가 했던 업무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를 대체인력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_\_\_ ③ 특정직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를 대체인력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체인력의 자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시설 종사자와의 원만한 관계형성 | ② 성실한 근무태도        |
| ③ 이용자에 대한 이해        | ④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 ⑤ 업무수행능력            | ⑥ 업무에 대한 책임감      |
| ⑦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 ⑧ 관련 실무 경험        |
| ⑨ 이용자와의 원만한 관계형성    | ⑩ 기타(직접 기입)       |



6. 대체인력은 어떤 수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보유자 (근무경력자)
- ②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보유자 (무경력자)
- ③ 사회복지사 이외의 관련 자격 또는 교육수료자 (근무경력자)
- ④ 사회복지사 이외의 관련 자격 또는 교육수료자 (무경력자)
- 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결격사유가 없는 고졸이상 학력자
- ⑥ 자격기준 필요 없음

7. 대체인력의 인건비로 1일 8만원(8시간 근로 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은 편이다
- ② 적당하다
- ③ 많은 편이다

8.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대체인력이 주말(휴일)에 일을 할 경우 1일 8만원(8시간 근로 기준)의 인건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은 편이다 ☞ 8-1 문항으로
- ② 적당하다 ☞ 9 문항으로
- ③ 많은 편이다 ☞ 9 문항으로

8-1.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주말(휴일) 근로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1일 인건비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일 80,000원 기준의 120%(1일 96,000원)
- ② 1일 80,000원 기준의 130%(1일 104,000원)
- ③ 1일 80,000원 기준의 140%(1일 112,000원)
- ④ 1일 80,000원 기준의 150%(1일 120,000원)
- ⑤ 1일 80,000원 기준의 200%(1일 160,000원)

9.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대체인력이 야간(저녁~아침)에 일을 할 경우 1일 80,000원(8시간 근로/합숙(취침) 시간인 22:00~06:00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의 인건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은 편이다 ☞ 9-1 문항으로
- ② 적당하다 ☞ 다음 페이지로
- ③ 많은 편이다 ☞ 다음 페이지로

9-1. 야간 근로의 경우 합숙(취침)시간(22:00~06:00)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합숙 시간을 포함한 야간 근로의 1일 인건비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일 80,000원 기준의 120%(1일 96,000원)
- ② 1일 80,000원 기준의 130%(1일 104,000원)
- ③ 1일 80,000원 기준의 140%(1일 112,000원)
- ④ 1일 80,000원 기준의 150%(1일 120,000원)
- ⑤ 1일 80,000원 기준의 200%(1일 160,000원)

☞ 다음 페이지에도 문항이 남아있으니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체인력을 시설에 파견(배치)하기 전 필요한 교육내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이용자 관련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이해 | <input type="checkbox"/> ②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해          |
| <input type="checkbox"/> ③ 성폭력 예방 교육             | <input type="checkbox"/> ④ 재난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
| <input type="checkbox"/> ⑤ 현장실습                  | <input type="checkbox"/> ⑥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문서작성 등) 이해 |
| <input type="checkbox"/> ⑦ 시설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 <input type="checkbox"/> ⑧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이해    |
| <input type="checkbox"/> ⑨ 이용자 인권 및 학대 예방        | <input type="checkbox"/> ⑩ 이용자 생활지도 기술            |
|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                                                   |

11. 대체인력의 교육이수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4시간     ② 8시간     ③ 12시간     ④ 16시간     ⑤ 기타( )

※ 작성자 일반사항

(작성자의 인적사항은 향후 대체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의견 청취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하오며,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명		직책(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사무실	
	이메일	

귀한 시간 내시어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와 시범사업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대전복지효재단 정책연구 2016-2]

---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

발행일 : 2016년 10월

발행인 : 이상용

발행처 : 대전복지효재단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우: 34917)

전화 : 042-331-8932

팩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wf.kr>

---

ISBN 978-89-98568-33-7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복지효재단에 있습니다.

---

Daejeon Welfare Hyo Foundation



## 대전복지호재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34917)

TEL : (042)331-8932 FAX : (042)331-8924 <http://dwf.kr>

